

발 간 사

반세기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한 결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으로 2천년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대북 포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도 했지만, 남북관계가 반세기에 걸친 대결과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어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우리국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을 관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언론·문화·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4자회담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에도 있어서도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의 해결과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으로써 화해협력의 남북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해 우선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및 미사일개발문제 등 당면 현안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면서, 세계적인 탈냉전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아직 대남적대노선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국간 회담재개 노력에 호응하여, 지난 2월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해 온 것이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와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지난 해 헌법개정시 가격·원가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경제관료 등을 해외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제·경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대북 포용정책이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백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 추진 목표와 과정, 성과 등을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노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9년 3월

통일부장관

제1장 남북분단과 통일정책의 변천

제1절 분단사의 전개

1. 분단과 6·25사변

한반도의 분단은 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분단의 단계를 거치면서 고착화되고 심화되어 왔다.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전후처리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하면서 비롯되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 2일, 맥아더 태평양지구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일반명령 제1호를 공포하였는데, 이 명령은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실시하되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담당하고 그 이남은 미군이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38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그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당국은 처음부터 이른바 ‘혁명적 민주기지’의 건설을 목표로 북한지역의 공산화를 추진하였다. 1946년 2월 8일 소련당국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권기관을 수립케 함으로써 남한에 앞서 단독정권적 성격을 갖는 소비에트식의 정치체제를 구축시켰다. 이어 1947년 6월 14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공산정권 단독수립 방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은 헌법초안의 작성과 함께 공산주의식 통치체제에 따라 ‘북조선노동당’과 ‘북조선인민회의’를 조직·발족하고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이후 북한은 1948년 8월 25일 단일후보에 대한 공개 찬반투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9월 8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마침내 동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한편 남한지역에서의 미군정당국은 1946년 2월 그 자문기관으로 ‘조선민주주의원’을 구성한 후 12월에는 이를 ‘과도입법의원’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한지역의 좌익세력은 북의 지령에 따라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1946년 10월에 ‘남조선노동당’을 창당하고 군정청의 시책에 대항하는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우익의 민족진영 인사들 사이에서는 내부분열이 시작되었는데 소련의 기도를 간파한 이승만 중심의 우익진영이 남한지역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반면, 김구·김규식 등 임정세력은 단정수립에 반대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이미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대립하고 있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소집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47년 10월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미국은 당초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안을 제시하였으나, ‘과도입법의원’이 1947년 1월 20일 신탁통치 거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내 결렬되자, 마침내 신탁통치를 단념하고 한국의 독립정부 수립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한국문제는 UN에 회부되어 1947년 11월 UN 총회에서 「UN 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와 한국의 총선거 실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동 위원단 임북을 소련이 거부함으로써 UN 결의에 따른 남북 단일정부 구성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과

정에서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에 의해 단일정부를 수립하고자 ‘북조선노동당’에 대해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고 1948년 4월 평양을 방문했으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책략에 이들의 꿈은 무산되었다. 결국 2월의 UN 결의에 따라 ‘선거감시 가능지역’인 남한 내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정치적인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부터 북한은 ‘민주기지론’을 내걸고 전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인민군을 창설하는 등 군 강화에 착수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분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일제히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동족상잔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6·25사변은 UN군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제화되면서, 약 2년 반 동안 막대한 소모전이 계속되었다.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일단 정전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6·25사변은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철저히 파괴하고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남북한을 합쳐 500만 이상의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또한 300만 이상의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됨으로써 전쟁 이전의 월남자와 북으로 남치된 사람을 포함하여 1천만명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6·25사변은 남북한 주민간에 증오와 갈등을 유발하여 수천년간 이어져 내려온 민족공동체 의식을 파괴하였으며, 상호 불신을 심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야기함으로써 민족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오고 있다.

2. 분단의 심화와 영향

분단과 6·25사변을 거치며 남북한은 철저히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한국은 정부수립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고 선거제도에 의해 국민대표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의회주의와 법치주의, 다원주의를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정치이념으로 채택하였다. 한국은 민주정치 경험의 부족, 북한의 남침위협,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근대화의 급속한 추진 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개방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자유민주이념을 근간으로 하였다.

북한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노동당이 국가기관과 각종 정치조직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사회활동의 전영역에 당의 영향력이 침투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방해가 되는 민족진영 인사들을 제거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정립·활용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주체사상은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선언하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인독재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을 통해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독특한 통치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이 분단되었을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남한의 경우 농업이 주산업이었고 공업분야에는 미미한 경공업시설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북한은 중공업이 발달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하자원과 공업시설 및

발전시설은 북한지역에 편재해 있었다.

한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창의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6·25사변 후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주도 산업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선진기술을 수용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1960년대부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래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력에서 북한을 능가하고 1980년에는 한국의 1인당 GNP가 북한의 두배를 넘어서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경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 등 세계화추세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1997년 12월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온 국민이 단합하여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하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병행·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분단과 동시에 생산수단의 사유를 금지하고 이른바 전인민적 또는 협동적 소유에 의한 생산수단의 공유를 토대로 계획경제를 추구하였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화와 계획경제는 6·25사변 후의 복구사업 및 산업화를 추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비교적 효율성을 발휘하였으나,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역기능이 심화되었다.

북한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제건설이 공산독재체제의 완성 및 대남적화통일의 물질적 기초 마련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중공업 우선 정책이 추구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술부문의 전반적인 낙후와 더불어 중·경공업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산업부문간 연관효과를 살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동구·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라 국제적 협력기반이 상실되고 자연재해가 겹치는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여 주민의 기본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는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었다.

분단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면서 남북한은 체제경쟁을 위해 막대한 양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민족 전체의 역량은 상당부분 소모될 수 밖에 없었다. 군사안보 문제의 해결에 남북한은 제각기 최우선 목표를 두어 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치열한 외교적 경쟁과 재원 낭비를 감수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1천만 이산가족은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으며, 북한주민은 초보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 분단상태는 남북간의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주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분단상태의 종식, 즉 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통일은 그 어떤 희망이나 당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민족적 과제라고 하겠다.

제2절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개관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통일에 관한 기본입장을 천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규정에 따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②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적 선거를 실시, 북한동포를 위하여 국회에 공식으로 남겨둔 100석의 의석을 채워야 한다.

③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억압받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위해서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의 특징은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북한당국을 철저히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방법론적으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특히 UN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그 방법으로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 당국을 남한 당국과 대등한 지위에 두고 출발하는 모든 논의를 배제하였다.

정전협정에 따라 1954년 6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14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골자는 'UN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이승만 정부는 UN총회 결의에 따른 통일실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1960년 4·19혁명 이후 보수·혁신의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정치활동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양한 통일방안이 대두되었다. 내각책임제 헌법에 기초하여 출범한 장면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비등하는 여론을 감안하여 1960년 8월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제2공화국은 집권기간이 1년여에 불과했지만 제1공화국에 비해 통일문제의 논의는 훨씬 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통일논의의 상당부분은 분단의 원인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국제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경시한 데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우리사회의 혼란을 겨냥하여 다양한 대남공세를 전개하였고,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5·16을 계기로 등장한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제1항은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선언하였다. 즉 ‘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이 통일의 기본방향이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를 통해 정부의 통일방안은 UN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실지회복에 의한 국토통일임을 밝히고, 통일을 위한 제반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단계가 된다”고 함으로써 ‘선 건설 후 통일’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또한 민주주의가 정착된 다음에 통일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수립을 위해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이 창설되었다.

1968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대에 들어 미·중, 일·중의 접촉, 미·소·일·중 4국간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세계적인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1960년대 우리 경제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박정희 정부는 대북정책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긴장상태의 완화없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 ②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
- ③ 남북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용의가 있다.
- ④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북한의 유엔 참석을 반대하지 않는다.
- ⑤ 남북한의 어느 체제가 더 잘살 수 있는가 개발과 건설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을 제의한다.

이러한 기본정신에 따라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적십자회에 1천만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 제의를 북한적십자회가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만에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양측의 당국자간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을 거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 양측은 ①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③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등 3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상호 중상·비방 중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다방면적 교류실시, 직통전화 설치 등 실천조치에 합의하고,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대화 진행과정에서 북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의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른바 대화환경의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해결 등을 요구하며 통일전선전략을 노골화하였다. 결국 이같은 북측의 부당한 주장으로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본좌표와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천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경주, ② 한반도의 평화유지, 남북간의 내정불간섭 및 불침략, ③ 성실과 인내로써 남북대화 계속, ④ 북한의 국제기구에의 참여 불반대, 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⑥ 모든 국가에의 문호개방, ⑦ 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추진 등이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74년 1월 18일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동년 8월 15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 1979년 1월 19일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 대화제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974년 8월 15일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서는 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 ② 남북간에 상호문호개방 및 신뢰회복을 위하여 남북대화, 교류와 협력 추진, ③ 이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4.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1981년 3월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통일되고 독립된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화통일 노력은 첫째,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과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 제의, 둘째, 통일문제와 남북한 관계정상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천명, 셋째,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20개 시범실천사업’ 등의 제시로 구체화되었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하여 제시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대한민국 정권수립 이후 줄곧 견지해 온 평화통일정책을 종합·체계화한 것으로서,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통일이 민족자결의 원칙아래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로서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이 헌법에 따라 통일된 단일 주권국가를 완성시킨다는 것이 기본골자이다. 그리고 통일조국의 국호, 정치이념, 국내외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가운데 토의, 합의될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1982년 2월 1일 국토통일원장관 성명을 통해 통일방안 후속 실천조치로서 북한에 대하여 민족화합을 위해 20개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시범사업의 내용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개통, 남북 이산가족들의 편지교류 및 상봉실현,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의 자유관광 공동지역 개방, 쌍방 정규방송의 자유로운 청취, 민족사의 공동연구, 남북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등이

포함되었다.

1984년 8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북한 동포들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화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이후 동년 9월 8일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측이 수락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남북경제회담이 시작되고, 이어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게 되어 1986년 초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5년 1월 9일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를 제의하였고, 그후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남북총리회담 등의 실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5.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추세가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변화와 국민적 통일 열망에 부응하고자 1988년 6월 2일 통일논의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동년 7월 7일에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7·7 특별선언」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간 대결구조를 화해구조로 전환키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었다.

특히 「7·7 특별선언」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위한 실천조치들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9월 11일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식, 그리고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일시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통일국가의 수립절차는 우선 남북대화를 추진하여 신뢰회복을 기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어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마지막으로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민족공동체헌장’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을 두도록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7·7 특별선언」의 발표와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간의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였다.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국무총리는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북한간 제분야에서의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쌍방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여덟 차례의 예비회담과 두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진 끝에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적인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예비회담에서 합의한 절차와 의제에 따라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후 남북 쌍방은 상호 의견접근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회담에서 전문과 25개 조항으로 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후 남북 쌍방은 정치, 군사, 교류협력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제7차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우리의 팀스프리트훈련을 구실로 1993년 1월 29일 모든 남북당국 사이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6.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시도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기존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키면서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상황을 반영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에서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였다.

제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이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평화공존

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제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되게 된다.

마지막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여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취임사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일성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제재조치에 ‘서울 불바다’, ‘전쟁 불사’ 등의 발언으로 위협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철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촉구하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간 고위급회담이 3차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미·북한은 1993년 6월 11일 북한 NPT 탈퇴 보류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미·북한간에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중94.10.21)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1994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으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북한이 7월 11일 “우리측의 유고로 예정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입장을 통지해와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식량난 또한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1995년 수해로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포에 대한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우리정부가 1995년 5월 26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한에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에 따라 북경회담이 성사되었으며, 이후 동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였다. 그러나 쌀 15만톤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한 몇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 내부적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논란이 유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꾸준히 전개하여 1996년과 1997년 국제기구를 통해 2,737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 1995년 6월부터 1997년 말까지 2,229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을 천명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을 때 그 실효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한·미 정상은 1996년 4월 16일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한과 정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4자회담’ 예비회담이 8월부터 11월까지 세차례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4자회담’을 개최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4자회담’ 제1차 본회담이 1997년 12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추진되었는데, 1995년 3월 9일 우리와 미국·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대북경수로지원사업 및 대체에너지 공급 등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공식 발족시켰다. KEDO는 동년 12월 15일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북한도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이로써 경수로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KEDO는 한국전력을 주계약자로 지정하고, 1996년 3월 20일 KEDO-한국전력은 주계약자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또한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합의서 채택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 의정서», 「통신 의정서」 등이 체결됨으로써 1997년 8월 19일 북한 신포지역에서 경수로 부지준비공사가 착공되었다.

제2장 「국민의 정부」 출범과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

제1절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배경

세계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동·서 진영간 냉전적 대립구조의 와해를 초래하였으며, 전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질서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탈냉전의 과도기적 상황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이념·체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저하게 감소된 반면,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세계는 이념과 체제, 인종, 종교 등의 장벽을 넘어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경제적 분야에서는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한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으며, 환경·보건·기아문제 등과 같이 유관국가들의 협력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구소련이 해체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러시아 및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졌다. 한반도 주변4국은 활발한 교차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실리를 극대화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탈냉전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냉전적 대결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이 체제유지 차원에서 폐쇄적인 대외정책과 대남 적대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도 남북간에 소모적인 대결구도가 계속된다면 우리민족은 21세기의 밝은 장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 입장에서 한반도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체제위기를 겪고는 있으나 단기간내에 붕괴될 가능성은 적으며, 따라서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기보다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국제적인 탈냉전 흐름, 북한정권의 상당기간 존속 가능성 그리고 남북한 역학관계에 기반한 자신감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2절 대북 포용정책 추진기조 및 방향

1. 대북정책 목표 및 3원칙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현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 3원칙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대북정책 3원칙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철학으로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활성화해 나갈으로써, 포용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평화가 없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북 포용정책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력적화통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인식할 때 변화의 길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확고한 안보를 통한 평화정착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대북 포용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환경이 된다.

북한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긴장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우리의 안보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호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해 시인·사과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 흡수통일 배제

남과 북은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대결하고 반목하면서 살아 왔으며, 그 결과 상호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현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충격과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통일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단순히 체제나 영토를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 가는 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평화공존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 나가려는 것이다.

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반세기에 걸친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 쌍방이 필요로 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정부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에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취지에서이다.

또한 이는 그동안 주로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간 대결관계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관계로 바꾸어 나가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남북간에 화해협력은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간에 호혜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도 근원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대북정책 추진기조

정부는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하여 ①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②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실현, ③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⑤ 남북 당사자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의 추진 등을 대북정책의 추진기조로 설정하였다.

가.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동반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양면성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이중성을 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병행추진하자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긴장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의 길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근원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확고한 안보를 통한 평화정착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확고한 안보와 함께 우리는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고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의존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호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실현

정부가 ‘평화공존’을 대북정책 추진기조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
은 시간을 두고 달성해 가더라도,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존의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우선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분단상황을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구
도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분단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
력, 즉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평화
공존’과 함께 ‘평화교류’를 병행추진함은 평화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 활성화
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다.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통일국가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변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은 이미 역사
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도 그들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
며, 실제적으로 북한내부에서도 이미 부분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문제는 그같은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변화
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 체제의 붕괴를 의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반발을 불러 일으
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
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한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대남도발,
선전선동, 억지주장 등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의연히 대처하는 한편, 보다 많
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 그리고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남북 상호
간의 이익이 됨은 물론 나아가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인 목표에 부합되
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당국간 대화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민간차원에
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남과 북의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주고 받는 양과 종류 그리고 시기 등이 동일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 민족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야 할 것이다.

마. 남북 당사자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남북문제는 우리 자신의 삶과 민족의 장래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당연히 우리 7천만 겨레의 뜻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권한과 책임을 가진 남북 당국간의 대화야말로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정부가 남북 당국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울러 한반도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의 노력이 보다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녕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위한 4자회담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바.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의 추진

우리의 대북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기반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명성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뜻과 역량을 한줄기로 결집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3. 대북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대북정책 목표·3원칙 및 추진기조에 입각하여 ①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②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③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④,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 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⑥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을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가.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남북문제는 당사자인 남북간의 대화, 특히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지난 1971년부터 남북 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많은 대화를 가져왔으며, 1992년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서명하고 이행을 약속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이행해 나가면서 점차 전면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상호 이익을 도모함은 물론, 반세기에 걸친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실질적인 견인차이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에 시장경제원리의 효용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민족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이루어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민간차원의 경협이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인의 자율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과당경쟁 방지 등 경협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정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간에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체결되어야 한다. 향후 정부는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남북이산가족은 분단에 따른 고통을 직접 겪고 있는 희생자이다. 남북이산가족들이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편지 한통 제대로 주고 받지 못하면서,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더욱이 분단 반세기가 지나면서 상당수의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 하거나 고령화됨에 따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회담 또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교환·상봉 등의 실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행정적·제도적 방안도 강구·시행해 나갈 것이다.

라.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시장의 상실과 체제 자체의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난이 심화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 생산이 더욱 감소하여 심각한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노력도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꾸준히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난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남북 농업개발 협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부차원의 대규모 직접지원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탄력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마.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남북간의 많은 인적·물적 교류를 수반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

간다는 것이다.

바.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정착 노력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 전체의 지역안보와 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긴 안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관련 당사국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호혜적 상호의존의 폭을 넓혀 갈 때 적극적 의미의 평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안보만이 아닌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면서 유관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북아 안보와 협력을 위한 지역협력체의 구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제3절 대북 포용정책 추진경과

「국민의 정부」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확신아래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도 했지만,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한반도 평화유지 환경이 개선되는 등 남북관계가 반세기의 대결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무엇보다 남북간 대화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는 대통령 취임사 및 3·1절 기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실천을 북한에 제의하였으며, 동 합의서의 이행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힘입어 1998년 4월 중단된지 3년 9개월만에 남북당국대표회담이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우리측은 비료 20만 톤 제공 의사 표명과 함께,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였으나, 북측이 끝내 이를 거부함으로써 동 회담은 가시적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 회담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측에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월 15일 ‘대한민국 50년’ 경축사를 통해 이미 구성된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과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상설대화기구의 창설을 제의하고, 북한이 원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분야별 공동위를 하루속히 가동시

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북측이 당장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풀어나가는 남북간 상설대화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국간 대화재개 노력과 함께 정부는 이산가족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생사확인, 상봉 등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회담 또는 적십자회담 등을 통한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정부는 북한측에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의 교류를 지원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추진하고 있다. 1998년 9월 1일 이후 고령 이산가족의 경우,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교류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지원기구로서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가 지난 5월 28일 발족하였고,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산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2월 18일에는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 1998년에는 전년에 비해 이산가족의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은 4.9배(3,726명), 생사확인인 2.3배(377명), 제3국 상봉은 1.8배(108명)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 목적의 방북도 성사되었다.

반세기에 걸친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과 북이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함은 물론,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1998년 4월 30일에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기업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었다. 1998년 11월 18일 현대 금강호가 첫 출항을 한 이래 12월 말까지 두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10,554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그 밖에도 현재 부두 및 편의시설 공사 등을 위해 400여명의 인원이 현지에 머무르면서 북한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1998년 한해동안 경제협력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3,317명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이 숫자는 민간인의 방북이 허용된 1989년 이후 1997년까지 9년간의 총 방북인원 2,408명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또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도 경제는 물론, 예술·학술·언론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와 같이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민간차원의 남북간 접촉을 적극 확대해 나가려는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정부는 남북주민들간의 접촉을 증대시키고, 민간단체의 활발한 참여 속에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1998년 2차례에 걸쳐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3월 18일 1단계로 대북지원 관련 방북 및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을 허용하였으며, 9월 18일에는 2단계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을 허용하였다. 우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1998년 정부차원에서 1,100만달러, 민간차원에서 2,085만달러 등 총 3,185만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다. 1998년 11월 9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됨으로써 경수로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측은 실제공사비의 70%를 기여하되, 우리의 어려운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전액 원화로 부담기로 하였다. 현재 부지준비공사를 완료하고 부지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북정책의 추진체계의 정비 및 대내외적 지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정부는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기되는 안보 및 대북정책 관련 현안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그 일환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하고, 동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8년 한해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차례, 상임위원회는 총 36차례 개최되었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을 위해 여론조사, 정책자문기구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책설명회 및 강연회의 개최, 해설자료 발간 등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으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9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년 6월 북한 잠수정의 동해안 침투사건 직후에도 국민의 62%는 포용정책의 기초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년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2.6%가 포용정책을 실사구시적 방안으로 신뢰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1998년도의 큰 성과라고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일본, 중국 국빈방문, 그리고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 아·태경제협력체(APEC),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 참석 등을 계기로 주변국가들은 물론, 전세계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8·15 통일대축전 제의를 계기로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 민간통일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하 '민화협')가 결성되었다. '민화협'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일·대북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진 민간단체들이 하나의 회의체를 결성한 것으로서 향후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합의 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이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제1절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1. 남북교류협력 추진노력

정부는 1988년 「7·7 특별선언」으로 개방과 화해정책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중90.8.1)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법의 테두리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이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으나, 북한측이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을 거부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은 1993년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1994년 10월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정부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를 발표하는 등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제반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제협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1998년 4월 30일 발표한 「남북경제협활성화조치」로 구체화되었다. 동조치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정부는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 교류협력 질서 확립에 주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1998년 들어 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문화예술·종교·언론 등 사회문화분야의 방북 및 협력사업은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 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1998년에는 「남북경제협활성화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예관규정」을 개정하여 수시방북제도를 기업인 일반에게로 확대하고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를 신

설하였다. 또한 「남북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축소하고, 반출방식 및 생산설비 반출규모 제한을 폐지하였다.

정부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시행 이후에도 관련 법령의 정비를 계속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 총 규제 40건 중 14건을 폐지하고 15건을 개선하는 등 총 규제의 70%를 완화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박·항공기에 의한 북한항행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남북간 용역도 세계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부고시인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금강산관광사업의 성사로 대규모 단체방북이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도 제정하였다.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정부출연금이며, 일부 민간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향후 대규모 수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기금·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1998년 12월 말까지 정부출연금 5,350억원, 민간출연금 5억 4,300만원, 운용수익금 1,206억 7,100만원 등 총 6,562억 1,400만원이 조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초기에는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 국제대회 단일팀 출전지원과 쌀 직교역의 손실보전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었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는 북한에 대한 쌀 15만톤 무상지원 및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북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에 사전 용역비 600만달러를 지원하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4,500만달러를 대출한 바 있다. 1998년 12월 말까지 1995년의 대북 쌀 15만톤 무상지원 비용 1,854억원 등 15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총 3,02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밖에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1998년 12월 말 현재 3,522억 2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중 1,806억 1,900만원은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며, 1,715억 8,300만원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제2절 남북인적교류

1. 남북왕래

가. 개 황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1998년 12월 말까지 금강산 관광 광객을 제외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729건(6,836명), 승인 668건(6,365명), 성사 584건(5,724명)이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15건(607명), 승인 14건(597명), 성사 12건(575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남한방문보다 북한방문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인적 왕래가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1992년까지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1995년부터 기업인,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관련 인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교류협력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감에 따라 지난 수년간의 방북인원을 능가할 정도로 북한방문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93년까지는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1994년 이후 1998년 12월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북한방문

(1) 기업인 방북

1992년 10월 남포경공업단지 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 이후 한동안 단절되었던 기업인의 방북은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97년 들어 재개되기도 하는 등 기업인의 방북이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쫀98.4.30)에 따라 기업인의 방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8년 한해의 방북실적은 신청 95건(312명), 승인 91건(293명), 성사 77건(231명)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특히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이 성사되었고, 이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간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사회문화분야 방북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북한방문은 초기에는 남북국악인 서울·평양 공연과 남북통일축구대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과 남북여성세미나 등 남북공동 참여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92년부터는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북한방문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1996년까지는 북한이 체제유지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 측 사회문화계 인사의 방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1997년 들어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종교인,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방북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 문화계의 대북교류 열기가 고조되고, 북한도 사회문화분야 교류에 다소 융통성을 보임에 따라 지난 수년간에 비해 방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8년 한해의 방북실적은 신청 66건(352명), 승인 60건(300명), 성사 40건(238명)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에 성사된 주요 방북사례로는 리틀엔젤스예술단 평양공연, 주요언론사 관계자의 방북 등을 들 수 있다.

(3)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관련 방북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은 대폭 확대되고 있다. 1995년에 부지조사 활동이 시작되어 부지조사단 및 관련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하였다. 1997년에는 초기 현장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실무협상단과 초기현장공사 착공식(8.19) 참가 정부대표단, 부지조사단 등 총 571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8년 들어서는 초기 현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12월 말까지 97건 756명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현재 초기 현장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진력(주)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이 장기체류 중이며, 향후 본공사 착공 등 공사진척에 따라 방북 또는 현지 체류인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대북 식량지원 관련 방북

1997년에는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민간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남북한 적십자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원식량 인도요원 149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8년 들어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12월 말까지 20건 129명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다. 남한방문

북한주민들의 남한방문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북한대표단의 남한방문,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과 1992년 우리측 경제계인사 방문 및 산업시찰을 위한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일행의 남한방문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3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두만강개발계획 관련 통신분야 전문가회의(1.27~30)와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회의(11.8~10)에 각 3명씩 참석한 이후로는 북한주민들의 남한방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4년 이후 우리측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체육행사나 국제회의 등에 북한측을 꾸준히 초청하였으나 이에 응해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2. 북한주민 접촉

가. 개 황

남한주민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1998년 12월 말까지 신청 12,090건(25,246명), 승인 11,671건(24,031명), 성사 3,447건(9,26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한주민 접촉은 매년 증가하여 오다가 1996년 9월 북한의 잠수함 침

투사건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1997년 이후 다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8년 들어 이산가족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주민 접촉신청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주민 접촉은 기업인들의 교역·투자상담,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과의 서신교환,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학술회의 참석 등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경제분야

1989년 이후 1998년 12월 말까지 신청 2,993건(7,791명), 승인 2,895건(7,517명), 성사 1,499건(2,561명)에 이르고 있다. 1998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이 부진하여 신청 566건(1,374명), 승인 558건(1,345명), 성사 331건(565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물자교역 및 남북경협 협의 목적의 북한주민 접촉은 북경, 홍콩 등 제3국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접촉을 토대로 기업인 방북 및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

다. 사회문화분야

(1) 학 술

1989년 이후 1998년 12월 말까지 학술분야 북한주민 접촉은 신청 435건(3,002명), 승인 399건(2,692명), 성사 133건(1,700명)으로 집계되었다. 1998년에는 신청 49건(173명), 승인 46건(175명), 성사 21건(74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의 학술교류는 대부분이 중국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지역 동포학자·단체들의 북한과의 교류경험 및 지리적 근접성을 감안한 결과이기도 하다.

1998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제4차 남북해외학자통일학술회의(2.20~

21, 북경), 남북대학간 학술교류 협의(6.10~11, 북경), 제4회 조국통일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8.5~7, 비엔나) 등이 있다.

(2) 문화·예술

1989년 이후 1998년 12월 말까지의 문화·예술분야 북한주민 접촉은 신청 280건(1,317명), 승인 237건(1,234명), 성사 68건(649명)으로 집계되었다. 1998년에는 신청 48건(167명), 승인 47건(172명), 성사 27건(75명)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코리안 평화미술전 서울·평양전 개최 협의(4.6, 동경), 리틀엔젤스예술단 북한공연 협의(4.11~14, 북경), 윤이상 통일음악회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한 협의(6.22~23, 북경) 등이 있다.

(3) 체 육

1989년 이후 1998년 12월 말까지 체육분야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은 신청 162건(831명), 승인 153건(803명), 성사 44건(489명)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신청 36건(465명), 승인 34건(463명), 성사 13건(395명)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북한 권투선수 국제시합 출전 협의(5.4~

5, 북경), 아시안게임 참가 남북한 선수단 공동응원 협의(12.12~20, 방콕) 등이 있다.

(4) 관 광

1989년 이후 1998년 12월 말까지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은 신청 155건(483명), 승인 147건(455명), 성사 41건(116명)으로 집계되었다. 1998년에는 신청 15건(43명), 승인 15건(43명), 성사 7건(23명)으로 외형상으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예년과 달리 단순접촉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었다.

1998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추진 협의(7.5~6, 북경) 등이 있다.

(5) 종 교

1989년 이후 1998년 12월 말까지 종교분야 북한주민 접촉은 신청 299건(1,381명), 승인 245건(1,233명), 성사 94건(727명)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신청 55건(214명), 승인 51건(202명), 성사 35건(15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통일과 나눔 남북교회협의회(3.16~18, 시드니), 제6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회의(10.8~10, 오사카) 등이 있다.

(6) 언론·출판

1989년 이후 1998년 12월 말까지 언론·출판분야 북한주민 접촉은 신청 237건(623명), 승인 198건(531명), 성사 45건(130명)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신청 31건(53명), 승인 30건(54명), 성사 13건(2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1998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중앙·동아일보 등 언론사들의 방북을 위한 사전협의 목적의 접촉 등이 있다.

제3절 남북교역 및 교통·통신망 연결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남북교역은 1988년 「7·7 특별선언」 이후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1997년에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의 진전 등으로 교역량이 3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1998년에는 IMF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교역여건을 감안,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입·반출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는 등 남북교역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998년 한해의 교역규모는

221,943천달러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다.

나. 교역형태·품목

(1) 교역형태

남북교역은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약재와 농산물 및 위탁가공물품 등 일부품목은 직접교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입과 반출의 비율은 교역 초기에는 10: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6년에는 2.6:1, 1997년에는 1.7:1로 반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1998년에는 반출우위로 바뀌었다. 이는 경수로건설용 물자, KEDO 지원 중유,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 인도지원 물자 등 비거래성 물자의 반출이 증가한 반면, 내수경기 위축으로 반입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 반입품목

반입물품은 초기에는 철강금속류,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 1차 상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4년부터는 위탁가공제품인 섬유류의 반입이 증가하면서 2차 상품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1997년까지는 반입품목 중 광산물 및 철강금속류가 최대 교역품목이었으나, 1998년에는 섬유류가 42.0%로 반입비중이 가장 높고, 농림수산물 23.6%, 철강금속류 22.0%의 순으로 반입되었다. 광산물은 금괴 반입의 감소로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지난 10년간 금괴·아연괴등 광산물 및 철강금속류(68.6%)가 가장 반입비중이 높았으며, 섬유류(14.0%), 농림수산물(11.7%), 화학제품(3.2%), 기계·전기전자제품(0.8%) 등이 주로 반입되었다.

(3) 반출품목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위탁가공용 섬유류 위주로 품목구조가 바뀌었다.

1998년 반출의 품목별 구성은 기계류·운반용기계 22.3%, 섬유류 22.0%, 비금속광물제품 16.6%, 1차 상품 15.4%, 플라스틱·화학제품 7.5%, 철강금속제품 7.3%, 전기전자 4.2%, 기타 4.7%로서 섬유류는 전년보다 반출비중이 낮아졌으나 지난 10년간 반출규모로는 여전히 최대 교역 품목이었다. 경수로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으로 기계류·운반용기계의 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물품이 반출물자의 상당부분(12.1%)을 차지하였다.

다.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1991년에 시작된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1998년 70,988천달러로 전체교역액의 32.0%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이나,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1998년에는 컴퓨터용 모니터, 음향기기부품, 전자부품, 철도

차량, 카세트테이프 등 새로운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1998년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그간 협력사업 승인업체에만 적용되던 수시방북이 교역분야로 확대되자, 4개 기업 19명의 기술자가 북한을 수시방문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북한은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자 방북을 허용한다는 제한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첫 기술지도의 성사는 위탁가공교역 분야의 새로운 진전으로 볼 수 있다.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의 교역은 국내 산업보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교역확대에 한계가 있는 여건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유희산업설비와 북한의 유희기술인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탁가공교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2. 남북간 교통로 개설과 운영

가. 남북간 교통로 개설 추진

(1)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1991년 제47차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에서 한국은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간의 아시아북부횡단철도 연결의 타당성조사 사업을 제안하였고, 1992년 제48차 ESCAP 총회는 ‘아시아북부철도망 연결사업의 타당성 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타당성 조사에 의해 해운과 경쟁이 가능한 6개의 대안노선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① 한국-북한-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 ② 한국-북한-러시아-유럽, ③ 북한(나진)-러시아-유럽, ④ 중국(연운항)-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 ⑤ 중국-몽골-유럽, ⑥ 러시아-유럽 등이다.

1995년 ESCAP 정책담당자회의에서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대안노선의 운행시간, 요금, 서비스 등의 실질적 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1996년 제52차 ESCAP 총회는 ‘아시아북부육상교통망사업(ALTID)’의 추진원칙으로 ‘수도과 수도의 연결’ 및 ‘주요 국제교통로에 대한 방해받지 않은 접근’을 확인하였다.

1997년부터는 아시아북부 횡단철도 ‘컨테이너 수송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컨테이너 수송시범사업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는 ‘아시아북부노선 타당성 조사사업’의 미비점에 관한 실제적인 요건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사업이며, 2단계 사업은 실제운행단계로 1999년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아시아북부노선 철도망 연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 철도 연결을 통해 중국횡단철도(TCR) 또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되는 대륙연결 육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 구상에 따른 것이다.

(2) 대구-평양 비행정정보구역(FIR) 통과항로 개설·운영

1996년 9월 10~13일 방콕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제의에 따라 개최된 남북한간 협의를 통해 일부 기술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항로개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남북한은 항로개설에 관한 양해각서에 한국과 북한의 양당사자가 ICAO와 합의하는 3자합의 방식으로 하고, 관제협정은 남북한 항로관제소간에 직접 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항로는 대구/평양 FIR 통과 북미주~서울항로와 평양 FIR 통과 일~중항로를 개설키로 하고, 한국 등 모든 나라의 항공기에 대해 무차별 개방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남북한을 직접 당사자

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리측의 제의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1997년 10월 7~9일 방콕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대구-평양 항로관제소간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관문점경유 직통유선전화’로 하고, 보조회선은 ‘ASIASATⅡ 인공위성 이용 남북한 직접연결 통신망’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공서비스 노선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하고, 「대구 항로관제소와 평양 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1~6일까지 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가 항공로에 대한 시험비행을 실시하였고, 4월 23일 항공로가 완전히 개설되어 월 180여편의 항공기가 동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1998년 9월 10일에는 대구 FIR을 통과하는 북한~일본간 직항로(B332항로)의 운영이 개시됨으로써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로 개설사업은 일단락되었다. 동 항공로 개설에 따라 북한은 최소한 연 200만달러 이상의 관제료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은 미주 및 러시아간 운항시간을 노선에 따라 20~50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000만달러 이상의 유류절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속초-나진-훈춘 해륙교통로 개설

1993년 한국과 중국은 한국의 속초와 중국의 훈춘간에 카웨리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여 중계수송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1995년 북한의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와 중국의 훈춘시 간에 중계수송을 위한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1997년 1월 31일 중국은 훈춘의 권하(圈河) 통상구를 임시 1급통상구로 승격시켰고, 이후 정부차원에서 속초-나진-훈춘 해륙교통로 개설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북한은 한국-중국, 중국-북한간에 분리된 합의를 통해 교통로를 개설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은 교통로 개설과 여객의 신변안전 등에 관해 정부간 합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여, 1997년 11월 13일부터 이틀간 남북한, 중국이 참가한 국장급 실무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한국은 3당사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해 여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교통로 운영을 지원할 통신수단의 연결, 돌발사태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구성·운영, 나진·선봉지대를 단순 통과하는 여객에 대한 차별없는 초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은 여객의 신변안전 보장은 당사국의 법률에 의해 보장하고, 당국간에는 교통로 개설 등 원칙적인 사항만을 합의하며, 구체적 사항은 사업자간의 상업적 계약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한국측이 제기한 통신망 연결, 민관공동협의회 구성·운영, 차별없는 초청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여객의 신변안전 보장 방안 등에 대한 남북간 이견으로 타결을 보지 못했다.

1998년에 들어서도 한국은 해로개설에 관한 우리측 합의서안을 작성하여 당사국에 전달하는 등 교통로 개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고 있다.

나.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1) 운항횟수

1998년 남북간 선박운항 횟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602회로 전년 대비 68.6%가 증가하였다. 이 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260회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342회로 전년 대비 40.2%가 증가하였다.

한편, 관문점을 통해 소(한우) 및 차량 등의 반출이 이루어져 남북간 육상교통로를 통한 수

송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남북 교통협력의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

(2) 물동량

1998년 선박에 의한 물동량은 총 55만 8,331톤 상당으로 전년동기 대비 8.6%가 감소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39만 6,111톤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16만 2,220톤으로 전년 대비 35%가 감소하였다.

3. 남북간 통신망 연결 및 운영

가. 남북간 통신망 연결 현황

현재 남북한간에는 직접연결 전화가 29회선, 제3국 경유 간접연결 전화가 14회선이 연결되어 있다. 직접연결 전화는 당국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연결된 전화는 총14회선으로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한편, 북한의 실포 경수로부지에 파견된 한국의 건설인력이 이용하는 남북한간 우편서비스는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나. 남북간 통신망 연결 추진

(1) 남북간 관제통신망 개설 및 운영

19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항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항로관제소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되었다. 남북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1997년 11월 19일에 ‘판문점 경유 남북한 직통전화’로 2회선이 개설되었고, 보조회선은 1998년 2월 17일 ‘인공위성(ASIASAT II) 이용 남북 직접연결 방식’으로 1회선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2)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현대측과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에 1998년 7월 6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가 체결되었다. 동 부속계약서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와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정부는 1998년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온세통신이 공동으로 신청한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단계 사업을 승인하였고, 11월 17일 제3국 경유 국제전화방식으로 6회선이 연결되었다. 2단계 사업은 북한내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남북간 통신회선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999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3단계 사업은 금강산 관광지역내에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강산 관광지역이 종합적으로 개발된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는 장기 사업이다.

제4절 남북협력사업

1. 남북 경제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1994년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고합물산의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필두로 하여 지금까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모두 40개 기업이다. 이 중 이미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대우 등 15개 기업을 제외한 25개 기업이 현재 협력사업자로 지정된 상태로 남북경협사업자 승인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나. 협력사업 승인 현황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대우, 태창, 녹십자 등 3개 기업, 수산업 분야에서 미홍식품, 태영수산/LG상사 등 3개 기업, 농업 분야에서 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 영농조합, 백산실업 등 3개 단체, 기타 아자커뮤니케이션(광고분야), 코리아랜드(부동산 분야)가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한국전력, 한국통신 및 한국외환은행이 각각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1998년 이후 협력사업 승인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지역협력사업을 통해서도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이다.

두만강개발계획의 목표는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점을 마련하는 데 있다. UNDP의 주관하에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광협에 따라 3개권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두만강경제구역(TREZ; Tumen River Economic Zone)은 나진-훈춘-포시에트로 연결되는 소삼각 지역(1,000Km²)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은 청진-연길-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대삼각지역(10,000Km²)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시아지역개발지구(NEARDA; North 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는 두만강지역개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내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TRADP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투자 전단계와 사업의 본격 시행단계의 2단계로 구분·추진되어 왔다.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1991년 10월 비상설기구로 정부차원의 계획관리위원회(PMC; Program Management Committee)를 구성,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야별로 실무그룹(WG; Working Group)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여 TRADP사업의 추진원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점진적 조화방식’을 개발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현실성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제도의 개선 및 조화를 통한 바람직한 교역 및 투자환

경을 장기간에 걸쳐 조성해 나가도록 하였다.

추진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위원회(Commission)와 접경 3개국위원회(Committee), 실행계획 추진협의를 위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 및 TRADP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였다.

정부는 제6차 PMC회의(쫀95.12.4~7, 뉴욕)에서 「두만강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협정을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해 나가며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정부는 1996년 4월 한·UNDP 신탁기금으로 100만달러를 출연하고, 북한 등 회원국에 투자촉진·사업지원센터 지원, 두만강유역 공무원 훈련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92만달러를 지원기로 결정하였다.

1996년 4월 북경에서 제1차 5개국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1996년 10월 제2차 5개국위원회 회의에서는 제2단계 사업추진 방향 등이 논의되었고, 일본의 가입 권유 결의안을 채택하여 회원국 확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TRADP 제2단계에 접어들어 5개국위원회 회의 및 분야별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특히 북한을 포함한 접경 3개국의 제도가 개선되고 조화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기대된다.

2.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포르투갈)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이 있는 이후,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상황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기피하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한동안 남북협력사업이 단절되었다가 1997년 들어 중앙일보사의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대북교류 열기가 고조되고 북한측도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다소 완화함에 따라 분야 협력사업도 크게 증가하였다. 1991년 이후 10개 단체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으며, 이중 7개 단체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이 1998년중에 이루어졌다.

나. 협력사업 승인 현황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에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과 1997년 중앙일보사의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 및 조사 사업 등 3건의 협력사업만 추진되었다. 1998년 들어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협력사업도 모두 5건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다.

제5절 금강산 관광사업

1. 추진경과

「국민의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 기조에 따라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배경으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1998년 6월 16~23일간 북한을 방문,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 위원장: 김용순)와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고 1998년 6월 22일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에 합의하였다.

그 이후 현대는 아태와 여러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신변안전보장문제’, ‘통신보장문제’, ‘공동해난구조문제’, ‘입북료문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이 가시화되게 되었다.

먼저 신변안전보장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와 북측은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췌98.7.6)상에 ‘신변안전과 편의 및 무사귀환’ 보장을 명기하였고, 북한의 치안책임자인 사회안전상 명의의 포괄적인 「신변안전보장 각서」(췌98.7.9)를 확보하였으며, 북한 사회안전성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이 평양방송을 통해 신변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췌98.10.23, 췌98.11.14).

통신보장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이 관광객 편의를 위해 통신을 보장함에 따라 금강산-원산-평양-인텔셋-일본-한국으로 연결되는 통신망을 구성하였으며(췌98.10.19, 「금강산관광 통신(1단계)보장을 위한 합의서」), 이에 따라 현재 6회선(관광선 4회선, 현지사무소 2회선)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북측은 관광객의 직업·신분을 이유로 입·출국을 불허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췌98.8.15, 「보장서」), 양측은 관광선 비상사태시에는 공동해난구조지역을 지정하고, ‘비무장 공동해난구조대’를 편성하기로 합의하였다(췌98.8.14, 「공동해난구조를 위한 합의서」).

입북료와 관련해서는 4박 5일 기준 관광객 1인당 입북료를 300달러에 합의하였다(췌98.9.2, 「금강산 현지 관광요금에 관한 부속합의서」).

2. 정부승인

가. 사업승인

1998년 6월 현대가 북측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의향서」 수준의 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정부는 1998년 8월 6일 현대3사(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를 협력사업자로 승

인하였다.

또한 관광에 필요한 구체적 사안들이 현대와 북측간에 합의됨에 따라 정부는 제4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췔98.9.7)하였다.

나. 개발사업으로의 확대

현대는 기존의 관광사업을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1998년 10월 29일 아태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는 북측으로부터 금강산 지역의 토지 및 시설물 이용권과 관광사업권을 단독으로 장기간 확보하여 호텔, 해수욕장 등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그 대가로 6년 3개월간 9억 4,200만달러를 북측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대상 지역도 외금강 일부지역에서 내금강, 통천, 시중호 지역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관세면제, 반출입·송금의 자유보장 등 각종 특혜들도 확보하였다.

이러한 관광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금강산 지역을 관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남북교류도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3. 관광현황

현대는 동해 여객터미날 건설 및 장전항 임시부두시설 설치, 시험운항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1998년 11월 18일 현대 금강호에 관광객 826명을 태우고 첫 출항했다.

첫 출항후 1998년 12월 말까지 관광선은 23회 운항되었으며, 총 10,554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이러한 숫자는 남북교류가 시작된 1989년 이후 1997년까지 9년간 북한을 방문한 총 인원 2,408명의 약 4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금강산 관광객 이외에도 부두 및 편의시설 공사를 위해 우리 공사인원 1,800여명이 북한을 방문(1일평균 400여명 체류)하여 북한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의 신변안전, 관광선의 안전운항 등에서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측도 신속하게 입북심사를 진행하고 친절하게 우리 관광객을 맞아들이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북측은 호송선박을 파견하여 환자가 신속하게 우리 지역으로 후송될 수 있었다.

관광시작 초기에는 북측이 우리 관광객 중 일부 언론사 기자와 통일부 직원에 대해 하선을 불허하여 이틀간 하선을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대측이 합의서 위반으로 항의하자 마지막 날 하선을 허용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모든 관광객들이 직장·신분에 관계없이 관광을 하고 있다.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

제1절 대북지원

1.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가. 정부차원 대북지원 추진경과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매년 100~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식량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집단농장제도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비료·농약 부족, 수송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아울러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은 북한의 경제 및 식량사정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식량을 요청한 것은 1995년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1995/1996년의 총식량 수요는 764만톤으로 이중 주식용은 487만톤, 비주식용은 277만톤인데 생산은 376만톤에 그쳐 부족분이 388만톤에 달하였다.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된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3월 7일 베를린 방문중 가진 독일 외교 3단체 초청연설에서 “북한에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 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으며, 5월 5일 제44차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 총회 개막연설시에도 대북 곡물제공 의사를 거듭 밝혔다.

1995년 5월 26일 일본을 방문한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리성록 위원장은 와타나베 전부총리 등 일본 연립여당의 방북단 대표들과 회담시 북한의 식량난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잉여분을 일정량, 일정기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쌀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같은 날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발표문을 통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 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동년 6월 17~23일 중국 북경에서 쌀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남북간 북경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1,850억원 상당)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당시 쌀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어 정부는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간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 차원에서 포괄적인 대북지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4자회담 제의시 표명한 바 있는 북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기여할 용의가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장비 대여 등을 통해 수해농지 복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1997년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 ① 북한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간 실질협력이 필요하며, ② ‘민족발 전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추진하고, ③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며, ④ 북한당국은 변화를 통해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대북지원의 4대방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96년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아동용혼합곡물(CSB) 3,409톤과 국산분유 203톤 등 30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고, 국제기상기구(WMO)를 통해 5만달러 상당의 기상자재를 제공하였다.

1997년에는 WFP를 통해 600만달러 상당의 아동용 혼합곡물, 1,053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옥수수 5만톤과 국산분유 300톤, UNICEF를 통해 수해로 파괴된 탈수방지약(ORS) 제조공장 복구비용 34만달러 등 2,667만달러 상당의 식량, 의료품 및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국제적 구호 전문단체인 UN기구에 현금 및 현물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6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루어졌다.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으며, 새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하나로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 농업개발협력 및 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IMF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N기구의 제4차 대북지원 계획 참여 요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9일 WFP를 통해 1,10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키로 발표한 뒤, 8월 말까지 총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을 전달하였다.

「국민의 정부」 대북지원 정책은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농업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되,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농업개발 지원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면서 이산가족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공조 차원에서 UN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물자의 전용 방지와 분배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나. 지원물자의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북한에 지원된 물품의 전용의혹은 대북지원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96년 9월 강릉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에서 미 구호단체가 지원한 통조림 캔이 발견되었고, 1998년 2월에는 유럽연합(EU)이 지원한 식용유가 평양시내 외화상점에서 WFP 직원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동년 8월에는 북측이 군용트럭을 이용하여 EU 지원물자를 비대상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미 하원 국제관계위 방북 인사가 목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군사적 전용 방지 등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측과 WFP·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지원된 식량의 분배결과 확인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분배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요원의 방북제한 및 북한내 자유로운 이동의 통제(방문 지역 사전허가제),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 등은 분배결과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북지원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분배 투명성 보장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해 왔다.

1998년 3월 25~2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 제5차 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의 요구에 따라 북측은 매회 물자전달 20일 이내에 도·시·군 등을 명시한 구체적 분배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였고, IFRC 요원의 분배결과 확인(1~2개 지역)도 약속하였다. 이후 3차 대북지원시(4~6월) 2개 지역(개성, 사리원)에 대한 분배결과가 확인되었고, 분배결과 내역도 우리측에 접수되었다. 아울러 9월부터 허용된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시 민간단체 관계자가 직접 방북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토록 유도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WFP·IFRC 등에 모니터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방북조사단에 우리측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하는 등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문제는 미흡하나마 초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가. 민간차원 대북지원 기반 조성

1995년 9월 14일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도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96년 9월 북한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동년 12월 북한의 공식사과 이후 재개되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31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산 쌀 추가 허용 등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 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4월 18일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접촉을 제의하였다. 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북경에서 2차에 걸친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직접 전달 방식으로 전환되고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동 합의서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지정기탁 등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간차원 대북지원을 활성화시키는 물론 남북간 상호신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97년 7월 23~25일까지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1차 지원에 이은 2차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7월 25일에는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는 그간 1차분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남북

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에 대해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직접전달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국내 민간단체들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었으며, 그 결과 남북적십자간 회담이 5년여만에 재개되어 남북간 직접전달을 실현할 수 있었다.

나.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본격 추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진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규모는 남북간 직접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39억 7천만원(496만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직접전달 합의 이후에는 1차분으로 6월부터 7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 3,800여톤의 식량을 신의주, 만포, 남양과 남포항, 흥남항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어 7월 25일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에 따라 8월부터 10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총 5만 2,800여톤의 구호물자를 전달하였다.

1998년 3월 중순에는 2차분 추가물량으로 17만달러 상당의 비료 800톤을 지원하였고, 이어 3월 25~27일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 제5차 대표접촉시 합의에 따라 제3차 대북지원이 4월에서 6월까지 추진되었다. 3차분 지원규모는 총 935만달러 상당(옥수수 기준 5만 4천여톤)으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었다. 아울러 9월부터는 3차분 추가물량으로 1,133만달러 상당의 옥수수와 밀가루, 분유 등이 지원되었다. 3차 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 경로 외에, 정주영씨가 기탁한 한우 1,001두가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6월 16일 및 10월 27일).

1995년 11월 이후 1998년 12월 말 현재까지 IFRC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은 총 4,321만달러(472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옥수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27만톤 상당이다. 아울러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총 130여개 단체(1천만원 이상 지원만 포함)에 이른다.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 민간단체가 지정한 구호물자 분배지역(단체)은 1차 지원의 경우 북한의 9개 시·도 및 4개 단체, 2차 지원시는 15개 시·도 및 13개 단체, 3차 지원시 8개 시·도 및 9개 단체로 북한의 전지역에 우리 국민의 동포애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대북 구호물자로는 중국산 옥수수와 밀가루·라면·감자 등 국내산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전달경로는 대체로 육로의 경우 신의주·만포·남양 등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통해 철도로 운송하였으며, 해로의 경우 흥남·남포·원산·청진을 통해 선박으로 운송하였다.

중국산 옥수수의 구입과정에서 초기에는 중국 현지시장 사정에 따른 정량부족 및 품질불량의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우리측은 구호물자 검수팀을 파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송에 있어서도 화차배정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측과 합의한 기간내에 구호물자를 전달키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남북주민들간의 접촉을 증대시키고, 우리 민간단체의 활발한 참여 속에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1998년 3월 18일 및 9월 18일 2차에 걸쳐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3·18조치」에 따라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등 민간 관계자 129명이 구호물자 인도, 대북지원 협의 등의 목적으로 방북하였다. 또한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췌98.4.25) 등의 행사시 언론사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다.

아울러 「9·18조치」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5개 단체가 한적을 통해 35억 여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995년 8월 23일 북한이 최초로 UN에 수해긴급지원 요청을 한 이후, UN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UN 인도지원국(OCHA)은 1995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WFP 등 UN기구에 대북지원을 호소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호소에 따라 WFP, FAO, UNICEF, WHO, UNDP 등의 UN기구가 전문분야별로 식량 및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해 오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국제선명회(WVI), 카리타스 등 비정부기구(NGO)의 대북지원과 함께 중국, 일본, EU, 스위스 등 개별 국가차원의 대북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국제 NGO들은 1997년 후반기부터 식량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의료지원 및 농업개발 등으로 대북지원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1995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총 7억 2,070만달러 수준(우리측 기여분 제외)으로 옥수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450만톤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기구도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문제를 중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북측에 제기해 온 결과, 1996년 초 30명에 불과하던 국제사회 북한 상주인원이 1998년 9월 말에는 9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어 구사요원 2명도 방북(췌98.6)하는 등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다만, 북한은 소규모 NGO들의 분배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1998년 9월 말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MSF)’가 철수를 발표한 사례도 있었다.

제2절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1. 당국간 및 적십자간의 대화 추진

남북이산가족 문제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한반도의 미·소 분할 점령으로 시작되어 6·25로 고착된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대부분의 가족이산은 미·소 군정 및 6·25사변중 발생하였으나,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체결후에도 남·월북 및 탈북 등으로 남북간 가족의 이산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남북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이산가족의 고령화 추세가 두드러져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가족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만해도 약 767만명이며, 이 중 69만명에 이르는 60세 이상의 고령이산가족은 10년 후에는 약 30% 이상이 세상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1960년대 말 국제사회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1970년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이 발표되고, 1971년 8월 12일 일천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동년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회의실에서 첫 회담을 시작한 이래 20여년간 70여회(본회담 10회, 예비·실무회담 60여회)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1985년도에 단 한차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9.20~23, 각 151명)이 성사되었을 뿐이었다(가족상봉은 우리측이 35가구, 북한측이 30가구임).

회담에서 우리측은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가족·친지의 생사와 주소를 알리는 문제, 서신거래, 상봉, 재결합 등 양측이 합의한 의제 5개항의 추진에 노력하였으나, 북한측은 ‘법률적·사회적 장애제거와 환경개선’이라는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6차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중89.11.21)에서는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에 합의(고향방문 쌍방 각 300명, 총 571명)하고도 북한측은 공연내용을 문제삼아 무산시켰다.

한편 정부는 1990년 7월 20일 이산가족 상봉과 민족자유왕래 실현을 위해 8월 13~17일간을 ‘민족대교류기간’으로 선포하고 8월 4~8일간 방북신청을 접수, 총 61,355명의 방북 희망자 명단을 북한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한의 접수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남북간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도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제기, 1991년 12월 10~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8조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명문화했다. 1992년 5월 5~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본회담에서는 첫 시범사업으로 8·15를 기해, 쌍방 각기 고령이산가족 100명씩을 포함하는 240명 규모의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교환키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이 실무절차 협의과정에서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무산시켰다. 이어 1992년 9월 14~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본회담에서는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3장 ‘인도적문제의 해결’에 완전 합의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93년 3월 19일 우리정부가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신뢰회복 등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인모를 아무런 조건없이 송환했으나, 북한측은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여러경로를 통해 당국간 및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제의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한편 그간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이 1997년 5월 재개되었고, 이때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은 별도문제임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1998년 들어서면서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이의 조속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대통령 취임사 등 계기시마다 남북당국간 또는 적십자간 회담 등 다양한 방식의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하여 왔다.

정부는 1998년 4월 11~17일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당국대표회담에서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대북 비료지원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이 비료지원문제만을 논의하자고 고집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측이 이산가

죽문제 해결에 호응해 나올 경우 보다 광범위한 남북협력조치가 가능하다는 일관된 기조하에서 대북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지원·촉진

남북한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교류가 어렵게 되자 정부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및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제도적으로 보장·지원해 오고 있다.

즉, 제3국을 통해 재북가족을 접촉(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재북가족과 접촉한 경우는 접촉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같음하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총 264개 민원창구를 개설하였다. 1993년 7월 1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13개 시·도에, 1994년 8월 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34개 시·군·구 협의회에 그리고 1997년 4월 14일부터는 이북5도위원회 및 14개 시·도 사무소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이산가족 교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민원창구에 대한 지도방문 및 이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류절차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이산가족교류 추진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가족교류를 보다 촉진해나가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재북가족의 생사확인을 하거나 제3국 상봉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사확인의 경우는 40만원, 상봉의 경우는 8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되, 생활보호대상자·국군포로 가족 등 ‘특별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교류주선단체(개인) 등 교류촉진 기여자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추진실적을 감안, 적절한 수준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들의 북한방문 실현을 위해 고령 이산가족 등의 방북절차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해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방북 대상인 60세 이상의 이산가족 및 1953년 7월 27일 이전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실향민, 고령 이산가족 방북 보조자, 재북가족 문병·문상 등 긴급 가사사유자 등은 초청장 등 방북기간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서류만을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이산가족교류 상황이 진전될 경우 이산가족의 재북가족 접촉절차도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이산가족교류 주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교류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류 주선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30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이산가족교류 주선 목적의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했으며, 정부와 교류 주선단체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1989년 6월 12일 이산가족교류를 시작한 이후 1998년 12월 말 현재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7,028건으로 이중 20%인 1,391가족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263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특히 1998년 들어 이산가족교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접촉신청은 12월 말까지 3,726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수준이며, 생사·주소 확인은

2.3배인 377건, 상봉은 1.8배인 108건, 서신교환은 469건이 성사되었으며, 처음으로 가족상봉 목적 방북 1건이 성사되기도 했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성사 실태(생사확인)를 살펴보면 ① 친척·친지 등 해외 동포의 방북 이용, ② 국내 민간주선단체 이용, ③ 언론매체 등 이용 ④ 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이 대부분이었으나 한·중 수교 이후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신청인을 원적지별로 구분해 보면 함경도가 509건(37%)으로 가장 많으며, 남한에서 출생한 이산가족도 273명이 있다.

한편 신청인의 현 거주지별 현황은 서울이 836건(60%)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 부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산가족 교류자 중 83%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3국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차원 교류가 공개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의 협의에 의한 우편물 교환소와 면회소 설치 등을 통해 가족상봉 및 자유왕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한 내부기반 구축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이산가족교류 본격화에 대비할 수 있는 내부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간 협의에 의한 교류 본격화에 대비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1998년 5월 28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등 22개 이산가족관련 민간단체들이 참여해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동 협의회는 총회(회장: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문위원회, 남북협력홍보위·교류후원위·학술연구위 등 3개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의견 자율조정 및 대정부 건의, 이산가족교류 활성화시 상봉 및 고향방문 대상자 선정 등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교류지원,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교류 추진 창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가족 관련자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교류 본격화에 대비하고 민간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8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를 추진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센터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조달청 입찰절차를 거쳐 전담사업자를 선정하여 1998년 9월 5일부터 시스템 구축을 착수하였다. 9월 25일에는 이북5도위원회에 정보통합센터 사무소를 개소하고, 12월 18일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장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통일부에는 이산가족 관리, 이북5도위에는 도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각각 구축됨으로써 통일부·이북5도위원회·대한적십자사를 연결한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민 편의제공을 위해 문자,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제공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보유정보에 대한 외부해킹 및 불법 대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완벽한 보안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보완 등 시스템 시험가동 및 유관기관에서 보관중인 기존 이산가족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작업이 완료되는 1999년 상반기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우선 대한적십자사, KBS 등 유관 단체별로 분산·혼재되어 있는 기존자료를 취합하여 활용하고,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전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신규등록을 추진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에 등록할 내용은 월남 실향민을 비롯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모든 이산가족들의 신상자료와 이산시기 등 가족찾기에 도움되는 자료 및 재북가족 현황 등이 중심이다. 정보통합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남한내 가족찾기는 물론 남북간 이산가족찾기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면회소 상봉 및 고향방문 대상자 인선 등 교류본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산가족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제3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1. 북한이탈주민 국내·해외 체류 실태

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양상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간 10명 내외였으나, 김일성이 사망하던 해인 1994년 이후부터는 연간 50명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탈북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입국자의 신분이 군인, 남파간첩 등 특수한 신분에서, 최근에는 별목공, 외교관, 해외 무역상사 주재원, 교수, 고위 당간부 등 전계층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국내입국 유형이 개별적·고립적 탈북으로부터 이웃과 연계하거나 가족을 동반한 집단탈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셋째, 탈북동기가 출신성분 차별에 대한 불만 및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 위주에서 최근에는 극심한 식량난, 생활고에 따른 생존권 확보를 위한 경제적 요인 및 사회일탈행위 등으로 인한 처벌우려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었다.

넷째, 군사분계선 위주에서 최근에는 제3국, 해상 등을 통한 국내입국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주민의 이러한 탈북현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개혁·개방 등을 통한 근본적인 체제개혁이 없는 한 탈북현상은 지속·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국내거주 실태

국내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총 948명으로 사망·이민자 204명을 제외한 744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직업은 회사원 등 봉급생활자가 약 27.2%, 상업 등 자영업자가 약 12.9%, 학생이 8%, 주부·고령자 등을 포함한 무직이 33.3%로 파악되고 있다. 생활면에서는 일부 생계곤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축소된 1994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의 경우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취업부진 영향 등으로 약 절반 정도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으나, 일부는 외로움, 경제적 자립능력 부족,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다. 해외체류 실태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중국에 약 2,500여명, 러시아 등지에 200~300여명 정도가 은신·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식량 획득을 위해 중국접경지역으로 탈북한 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체류자는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중국내 조선족이 집단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농사일, 잡역부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의 호구제도 및 북한공안원들의 체포활동 강화로 인하여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러 곳을 떠돌며 은신·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식량 등을 구할 목적으로 일시 탈북한 것이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들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국내입국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이 별목·건설현장을 이탈한 자들로 러시아 각지를 떠돌아 다니면서 짐수리 등을 해주며 은신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UN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협조를 통해 국내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전원수용 원칙에 따라 체류국 정부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UNHCR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국내입국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가. 정착지원 내용·추진 현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판단아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호·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하에서 추진하며, ②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시각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아래, 체류국 실정에 부합하는 보호·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화하고, ③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일회성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④ 정부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민간·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통한 안정된 조기정착을 도와주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첫째, 우리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안정 조치를 지원해 주고 있다.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로 결정한 후, 취직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초기 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지급하고,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따라 2억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설치하여, 우리사회를 소개하고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넷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인 1기 기능보유를 목표로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적성·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종을 정한 후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 주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는 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다.

다섯째,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취업이다. 따라서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종교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여섯째, 주거지원금의 지급 및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료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영구·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있다.

일곱째, 학력 등을 인정해 주고 있다.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 등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들이 한국에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다.

여덟째, 학교에 편·입학하는 자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각급 학교(대학원 제외)에 취학을 하는 경우 학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단 사립대학의 경우는 공납금의 반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아홉째, 의료·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있다. 사회에 편입된 후 희망자 전원에게 대해서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주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주선해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생활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또한 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여 각종 생활상담·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나. 정착지원시설의 건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새로 건립되는 정착지원시설은 부지 18,620평, 연건평 2,214평에 수용인원 100명 규모로 1997년 12월 29일 착공되었고, 1999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1998년 말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동 시설은 단순한 수용시설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능력을 배양해 주는 종합정착지원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내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동 시설에서 약 1년동안 생활하면서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 한편, 적성·경력에 따라 직업훈련도 받게 된다. 또한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생활에 필요한 각종 심리·법률·직업·고충상담 등을 하게 되며, 사회부적응자의 재교육장으로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3. 정착지원 법·제도 개선

정부는 초기 정착금의 부족 및 취업률의 저조 등으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등을 통해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착지원방안을 개선·발전시켰다.

첫째, 초기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충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초기 정착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1인 기준 정착금을 4배로 상향조정하고, 주거지원 규모도 실제 거주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시켰다.

둘째, 자립·자활기반 확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였다. 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간중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교육지원대상자의 연령한계를 대학의 경우에는 30세 미만에서 35세 미만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취업보장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셋째, 생계가 곤란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4년 이후 입국한 이탈주민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 생계곤란자들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일정기간 특별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적응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정착지원시설이 완공되면 보호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사회적응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기간도 연장하여 사회부적응자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중앙·지방·민간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민간차원에서는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로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종교단체를 네트워크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보호·지원체계를 한층 강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입국을 위하여 관련국과의 공식·비공식 외교교섭을 적극화하고, 또한 UNHCR, ICRC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이탈주민의 신변 안전 및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제4절 북한 인권개선 추진

1. 북한의 인권 실태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계급성과 집단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해 왔다. 최근에는 극심해진 식량난과 경제악화를 이유로 주민에 대한 통제 특히 계층구분에 의한 통제 방식을 통해 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과 정보접근 노력에 대해서도 인권의 상대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인권옹호는 오직 인민이 정권을 쥐고 있는 나라에서나 가능” 하다는 소위 ‘북한식 인권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 인권기구 및 인권 관련 NGO의 주요 보고서 등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실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보면, 법보다는 노동당 방침의 우위와 공개처형의 관행 등으로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이 경시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1997년 1월에 발표한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23건의 사례가 지적되어 국제사회에 공개되었다.

②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빈곤과 기아로 인한 주민 일반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11월의 WFP·UNICEF·EU에 의한 북한아동의 영양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60%이상의 아동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한다. 우리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이러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개선 차원과도 관련이 있다.

③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계급정책을 통해 제한·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을 3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1개 부류로 세분하여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헌법상에서만 형식적으로 보장될 뿐, 당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되어 왔다. 거주·이전의 자유도 엄격히 통제해왔

으나, 1998년 9월 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75조)을 신설하였다. 한편 이는 식량획득을 위한 주민이동 등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가 반감된다.

④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국제인권기구 보고서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는 10여개소의 수용소에 20여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실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는 모든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

⑤ 기타 남북관계와 연관된 인권문제 차원에서 보면, 남북억류자 및 국군포로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55년 이후 1998년 현재까지 3,745명을 강제 납북하여 이중 442명을 송환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남북억류자를 자진 월북자로 선전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동란 중 미송환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1998년 6월 2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 존재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6·25 사변중 실종된 국군포로 중에서 유가족 신고 및 민원에 의해 작성된 관련자료를 근거로 심의하여 결정된 전사처리자는 22,562명으로 집계된다. 유가족 신고 및 민원 등 제보가 없는 자와 국방부에서 실사를 통해 작성한 실종자 명부와 병적부 대조시 명단확인이 곤란하여 행불처리된 자도 19,409명에 달한다.

미송환 국군포로의 존재는 귀환 국군포로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으며, 국방부는 금년까지 233명의 생존추정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억류자 및 국군포로의 송환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자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기본인식하에 송환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적십자회담 등 남북회담이 개최될 경우, 포괄적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적십자사와 UN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송환노력과 국제적인 인권 NGO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사회의 여론조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국민의 정부」는 국제 인권기구 및 인권 NGO의 제시조건에 부합되는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립 등 인권개선 노력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국내적 인권개선 노력과 병행하여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탄압 상황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국제여론의 비등과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의 움직임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대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다.

1998년도 한해의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 관련 NGO가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지적한 사례를 들 수 있다.

① UN 인권소위원회는 1998년 8월 3~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0차 회기를 개최하였고, 8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결의안 전문 참조). 동 결의안은 프랑스 Louis Joinet 의원의 주도로 공동제안되어 찬성 19, 반대 4, 기권 1로 채택되었다. Joinet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1997년 UN 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 인권문제는 양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97년도 UN 인권소위원회 회의 대북 결의안이 거주이전의 자유 및 국제인권규약 보고서 제출문제 등 일부 인권문제에 국한된 일회성의 결의 내용이었다 데 비하여, 1998년도 결의안은 북한인권 문제를 UN 인권위원회 또는 UN 인권소위원회에서 계속 토의하려는 장기적인 목표에서 제출된 것이다. 또한 동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그 어느때보다도 구체적이고 강도높게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결의안의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② 피터 벌리 UN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1998년 11월 19일 UN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아프가니스탄, 쿠바, 수단, 이라크 등을 인권 억압국으로 지목하고 인권탄압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다. 벌리 차석대사는 “악명높은 북한의 인권실태는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억압적 체제는 생필품 부족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며 북한 주민의 기본권 존중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UN총회 차원에서 이처럼 강하고 명료하게 북한 인권실태를 거론한 것은 이번 연설이 처음이다.

③ 국제사면위원회(AI)는 1998년 6월 19일 1998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식량부족으로 인한 북한의 인권붕괴가 연 3년째 계속 악화되고 있다” 면서 “일부 관측통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한 달에 수천 명의 아동들이 아사(餓死)하는 등 지난 3년동안 2백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고 지적했다.

④ 미국 의회 산하단체인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NED)은 계간지 「민주주의 저널」 1998년 제3호에 북한 수용소내 인권유린 실태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 고발 기사는 동 계간지 편집자 Larry Diamond씨가 방한하여, 이선옥, 강철환, 최동철, 안명철씨 등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인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것이다. 이 기사는 정치범 수용소 실태에 대해 수감경험자와 경비원의 증언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동 기사는 현재 북한내에는 10개 이상의 수용소가 있으며, 20만명 정도가 구금되어 강제노역 및 자의적 처벌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과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⑤ 미국의 국제적 인권단체인 Freedom House는 1997~1998년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세계 191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평가한 「세계 인권상황 평가서」를 발표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이라크, 쿠바, 수단 등 16개국과 함께 “세계에서 최악(world’s worst)”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국가와 함께 인권상황 최악의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로는, 중국, 리비아, 시리아, 사우디, 미얀마,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부탄, 소말리아, 브룬디, 적도기네, 트르크메니스탄 등 16개국이다.

동 보고서는 남북한의 인권상황을 평점기준 최고 1에서 최저 7점으로 구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철저한 통제국가로 규정하고, △정권교체 불가능, △야당활동 금지, △광범한 내부감시, △기본권의 전면적 불인정, △사법부 독립성 부재, △‘반혁명 범죄자’의 불법처형, △교도소 재소자 학대, △수만명을 정치범 교화소 유치, △방송매체를 통한 사상교육, △종교의 자유 제한, △여행의 자유 제한, △월경자 강제 송환 및 약식처형, △노동권 불인정 상황 △북한 당국의 철저한 주민 감시 지속, 심지어 아동들에게 부모의 행동거지를 학교당국에 신고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과 Freedom House 평가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표명된 것으로서, 북한 당국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러한 성과는 ‘민족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국내 북한인권관련 NGO가 국제사회에 제공한 자료가 평가근거로 활용되어 얻어진 것이다.

⑥ EU와 북한간의 정치대화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EU측은 장시간에 걸쳐 북한의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인권 B규약을 탈퇴한 것을 수락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북한에서는 모든 인민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정의로운 법 질서하에서 고문도 없으며, 정치범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EU측의 인권문제 거론은 “그릇된 정보에 입각한 것”으로서 주권침해라고 강변하였다. 한편 이번 EU와의 정치대화에서 북한이 자국의 인권문제를 의제의 하나로 수락한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인권관련 대화가 성숙되어갈 경우, 자유민주적 인권 개념이 북한 사회에 보편화되어, 북한의 개혁·개방의 유도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북한은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을 통해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제75조에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진정한 동기와 의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과 권고를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한편, 1997년 12월 양순용씨 귀환 이후, 북한 당국의 포로에 대한 처우와 그 가족의 차별대우 등이 공개되면서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귀환한 국군포로 및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233명의 생존추정자 명단을 확보하였다. 1998년 한해만해도 9월 30일 장무환씨, 12월 10일 박동일, 김복기씨가 제3국을 경유하여 45년만에 조국의 품에 귀환함으로써, 북측의 비인도적 행태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제5장 남북대화의 재개

제1절 남북당국대표회담 추진

1. 추진배경

1998년 3월 25~2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북한적십자회측은 우리 대한적십자사측에 비료 20만톤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대규모 비료지원은 적십자사의 능력 밖이므로 남북당국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북한측은 1998년 4월 4일 남북적십자 관문점 연락사무소간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과 남 사이의 비료문제 등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4월 11일 북경에 보내겠다”면서 우리측에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북한측 제의에 대해 우리측은 “4월 6일 정세현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명의 대표단을 내보내겠다”는 수락 통보와 함께 회담장소 만큼은 “관문점이나 한반도내 편리한 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화통지문을 통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4월 7일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회담장소를 여러모로 보아 종진(남북적십자 대표접촉)과 같이 북경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다”면서 회담장소를 북경으로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경을 회담장소로 수용하고, 뒤이어 남북쌍방간에 대표단 명단을 교환함으로써 남북당국대표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회담진행

가. 제1차 전체회의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비료지원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대표회담은 1998년 4월 11~1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4회 등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998년 4월 11일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남과 북은 지난날의 대결과 반목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자고 촉구하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를 설치하고 고�령이산가족의 개별방문·상봉 및 시범적 사업으로 고향방문단 교환을 실시하며, 쌍방 최고 당국자들이 지명하는 특사를 교환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전면 가동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정상 가동해야 하며, 북한측이 희망하는 비료는 남북간 협력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되 비료지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측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북한측 전금철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남측의 비료지원은 북남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되며, 부대조건 없는 지원은 북남간의 화해, 단합도모, 북남대화의 새 장을 여는데 기여할 것”이며, 접촉의 의제는 비료문제를 비롯하여 서로 관심갖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비료문제를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비료 지원량은 50만톤으로 하고, 인도·인수와 관련한 실무절차 문제들은 1984년 수해물자 인도·인수의 경험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십자 구호물자 지원의 전례에 준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우리측은 이산가족, 특사교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와 비료문제를 병행 토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비료지원문제를 우선 결정한 후 상호 관심사를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나. 제2차 전체회의

1998년 4월 12일 개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비료지원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문제 및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토의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특히 1995년 쌀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일방적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남북관계 개선방안 문제를 토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비료가 지원될 경우 우리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회의는 진전없이 종료되었다. 다만, 남북쌍방은 수석대표 접촉에서 이 문제를 협의키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다. 제1~2차 수석대표 접촉

남북쌍방은 2차례의 전체회의가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1998년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2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과 연계시키지 않은 비료지원은 합의가 되더라도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북한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비료를 조건부로 받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고, 비료가 지원되어야 우리측의 정책 전환을 믿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2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접촉도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라. 제3차 전체회의

1998년 4월 14일 개최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괄타결 방식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 ① 4월 말까지 비료 3만톤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5~6월에 전달한다.

- ②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원칙에 합의,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4월 25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대표접촉을 진행한다.
- ③ 이산가족문제, 특사교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
- ④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비료지원문제를 합의한 후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이산가족면회소문제는 적십자 단체간의 사항이므로 당국대표회담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우리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거부하였다.

마. 제3~4차 수석대표 접촉

1998년 4월 16일 개최된 제3차 수석대표 접촉은 북한측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4월 25일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하면, 비료 20만톤 지원을 합의서에 명기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절충안으로 ① 한국측의 비료 30만톤 제공 ② 이산가족문제는 제6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토의 ③ 상호 관심사 계속 토의 ④ 제2차 남북당국대표회담 4월 29일 북경 개최 등을 주장함으로써 협이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또한 4월 17일 열린 제4차 수석대표 접촉에서도 북한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특히 우리측의 대북정책과 대화자세를 시비하면서 수석대표 접촉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회담중단 선언을 함으로써, 3년 9개월만에 재개된 남북당국간회담은 결실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남북당국대표회담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협상보다는 무조건·일방적인 지원만을 고집함으로써, 모처럼 재개된 당국간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되었으나,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원칙을 북한측에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제2절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1. 진행경과

1995년 8월 북한은 이례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피해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유엔에 긴급구호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5년 9월 이후 WFP(국제식량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차원에

서의 대북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하여 북한동포돕기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31일 대북지원 품목과 참여범위 확대조치를 내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는 1997년 4월 1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북한측에 보내고 있는 지원물품을 보다 신속·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4월 29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4월 1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접촉 장소는 중국 북경으로 하고, 접촉 날짜는 5월 3일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한동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측의 수정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이 1997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중국 북경에서 4차례 개최되었다.

제1차 대표접촉(중97.5.3~5)에서 북한적십자회(북적)측은 지원식량과 물품의 전달절차 문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지원물량과 지원시기 등을 우리측이 먼저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한적)측은 대북구호물자 지원은 민간단체들의 성금과 물품들이 모아지는 대로 북한에 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의 양을 보내겠다고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하고, 절차문제에 대해 우선 토의하자고 주장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제2차 대표접촉(중97.5.23~26)에서 남북한 양측은 대북구호물자 규모를 옥수수 기준으로 5만 톤 정도로 하고 품종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으로 하며 1997년 7월 말까지 인도·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제3차 대표접촉(중97.7.23~25)에서 양측은 2차분 대북구호물자의 규모를 옥수수 기준으로 5만 톤 정도로 하고 품종은 옥수수 등 식량을 위주로 하며 1997년 9월 말까지 인도·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양해사항」을 채택하였다.

제4차 대표접촉(중97.12.22~25)에서 한적측은 제2차 지원과 관련 북적측이 합의서를 통해 약속한 대북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대북지원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결과 확인에 대한 북적측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적측은 분배투명성 보장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제2차 지원 합의서의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의 분배결과 확인’ 합의는 백용호 전서기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오히려 종전보다 후퇴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음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2. 제5차 접촉

북적측은 1998년 3월 2일 중앙통신을 통해 3월 중순이면 식량재고량이 떨어진다면 또다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3월 11일에는 제3차 대북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한적측이 이같은 북적측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이 1998년 3월 25~2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북적측 수석대표는 제3차 지원과 관련한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지원사업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이념에서 동포 형제를 돕는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인 만큼 어떠한 사심도 전제조건도 없어야 하며, 새롭게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동족을 돕고 민족적 유대로 이어가는 데 좋은 일이 되도록 지원을 받는 측에 부대조건과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야 하고, 새로운 지원사업은 변화되는 현실적 여건에 맞게 새로운 변모를 보여주는 방향에서 보다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이번 접촉에서 식량문제와 비료지원문제를 협의·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적측 수석대표는 「국민의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적의 대북지원은 순수한 민간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민간기증단체들의 분배결과 확인요청을 합의서에 담아야 함을 설명하고, 대북지원물자 전달절차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협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적측은 한적측에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차원에서 1~2차분 지원을 영(零)으로 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적측은 북적측의 새합의서 작성 주장에 대해, 적십자 활동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하게 되어있는 만큼,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동안의 합의서를 무시하고 새로이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십자 원칙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접촉은 제4차 접촉의 연장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 한적측은 제3차 지원품목은 국내산 밀가루를 위주로 하여 1, 2차 지원규모와 같은 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적측은 지원규모를 10만톤으로 생각하고 나왔으며, 지원량과 품목을 늘려 줄 것과 추가로 비료 20만톤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적측은 그와 같은 대규모 비료지원은 적십자사의 능력 밖이므로 남북당국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방은 제3차 대북구호물자의 지원규모, 품목, 지원기간, 전달경로 추가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분배결과 확인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적측이 종전대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현지 대표가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북적측이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수석대표 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수석대표 접촉에서 쌍방은 IFRC의 분배결과 확인을 합의서에 명기하지 않는 대신 ‘양해사항’으로 처리하기로 절충, 기존 한적측 안대로 합의하고 그 밖에 의견접근을 보았던 지원규모, 품목, 지원기간, 인도·인수지점 등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제3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추진

1. 진행경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1996년 들어 북한은 대미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한 후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에 관한 임무의 포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정전체제의 근본을 와해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행위 및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대화에 응해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 4월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양국정상이 진지하게 논의하여 「한·미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 및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공동설명회(췑97.

3.5), 공동설명회 후속협약(췑97.4.16~21), 차관보급 3자협약(췑97.

6.30), 예비회담 3회(1차: 췑97.8.5~7, 2차: 췑97.9.18, 3차: 췑97.

11.21) 등 예비과정을 거쳐 1997년 말 비로소 4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제1차 4자회담(췑97.12.9~10)에서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의 주도와 관련국의 뒷받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남북당사자 원칙 존중,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강구, 「남북기본합의서」와 「군사정전협정」 등 기존합의의 준수·이행,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의 단계별 협의·이행,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 구성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5개항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과 긴장완화 및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4자회담에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였다.

미국측은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그리고 4자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 이미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북한의 안보위협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4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차 4자회담에서 4자는 제2차 4자회담 준비를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개최(췑98.2 중순, 북경)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차기 의장국 순서를 결정, 그 결과를 의장성명(췑97.12.10)으로 발표하였다.

2. 제2차 4자회담

제1차 4자회담에서 북한측은 제2차 4자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1998년 2월

중순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정식 취임하기 전에 회담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측 정치일정과 연계시켜 특별소위원회 개최를 1998년 1월에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은 국제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예정대로 특별소위원회 개최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특별소위원회 취소에 대해 공식설명을 요구함으로써 1998년 2월 6일 4자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제2차 4자회담 개최전에 준비회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제네바에서 개최된 준비회의(중98.3.14)에서 한·미 양측은 제1차 4자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2개 분과위 구성문제와 관련, 이미 합의된 의제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긴장완화·신뢰구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2개 분과위가 우선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분과위 구성에 앞서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세부의제가 우선 채택되어야 한다는 종전입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각측 대표단은 이 문제를 제2차 4자회담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좌석배치와 관련하여 의장국(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알파벳 순으로 앉아야 된다고 주장,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장국인 중국측이 한국측에 융통성을 보여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한국측은 국제관례에 맞지 않으나 절차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며 좌석배치 문제가 아무런 정치적 함의가 없음을 전제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제2차 4자회담이 개막될 수 있었다.

제2차 4자회담은 1998년 3월 16~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의장국인 중국측의 사회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1일째 회의에서 한국측 송영식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4자회담과 남북대화는 병행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 체제가 준수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4자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화체제 분과위원회,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 김계관 수석대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장애가 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분과위 구성에 앞서 세부의제를 먼저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측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장기적 과정이 필요하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은 즉각적인 진전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우선적이고 손쉬운 조치들에 대해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과 그 과정이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4자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담의 주요 과업은 '분과위' 등 조직과 형식의 확정 및 이와 관련된 문제의 논의라고 피력하였다.

2일째 회의에서 한국측은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주도해야 함을 역설하고, 4자회담 진전을 위해 조속히 분과위 설치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과 분과위 구성은 세부의제가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미국측은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4자회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으며, 미·북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유지 실제당사자는 남·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측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상정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측도 분과위 설치와 관련, 한·미측의 분과위 설치 제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3~4일째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각 분과위에서 논의할 ‘논의방향’을 제시하며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분과위 설치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 미·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세부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였다.

5~6일째 회의에서도 북한측은 본국으로부터 기존입장을 고수하라는 훈령을 받았으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아 회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결국 4자는 차기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제2차 4자회담 회의진행 과정을 밝히는 「4자회담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회담을 끝마쳤다.

3. 제3차 4자회담

우리정부는 1998년 8월 초 하와이에서 한·미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1998년 3월 이후 중단 상태에 있는 4자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이러한 한·미간 협의를 바탕으로 1998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지하핵의혹시설 규명 문제 등 현안 문제를 포함하여 제3차 4자회담을 10월중 개최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25일 뉴욕에서 4자간 실무협의를 갖고 제3차 4자회담을 10월 21~2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다는 데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남북한 및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제3차 4자회담이 1998년 10월 21~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일째 회의에서 한국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4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인 회담조직과 회담운영 방안에 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본회담 의제를 심층 토의하기 위한 ‘평화체제’, ‘긴장완화’ 분과위 구성,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합의, 4자회담의 정례적 개최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북한측은 4자회담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북간의 심각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주장을 되풀이함과 아울러 한반도 내 군사장비 반입문제,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 등을 추가의제로 제시하고, 군사적 신뢰구축보다 정치적 신뢰구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북한측이 합의를 번복하고 절차문제를 구실로 회담진전에 난관을 조성한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회담 진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목적도 없이 회의만 계속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내보였다.

중국측은 1, 2차 4자회담을 통해 각측이 4자회담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분과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도달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각국의 의견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허심탄회하고 융통성있는 태도로 회담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일째 회의부터 한·미 양측은 2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의 명칭은 ‘평화체제’, ‘긴장완화’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2개 분과위 구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분과위 명칭을 부여하는 데에는 반대하였다.

한국측은 분과위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회담기간중 뿐만 아니라 본회담과 본회담 사이에도 개최하며, 이번 회담기간 중 분과위를 1차례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분과위를 본회담 기간중에만 개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분과위를 개최하는 것은 준비가 안되어 곤란하다면서 반대하였다.

한·미 양측은 2개 분과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의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평화협정이 미·북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종래입장을 되풀이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본회담을 3개월에 1차례 정도로 정례화하고 제4차 4자회담을 1999년 1월 18~2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회담 정례화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4자는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를 각각 논의하기 위한 2개 분과위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언론발표문」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제4차 4자회담부터는 분과위에서의 실질적인 작업을 개시하기로 하는 「분과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를 채택하는 한편, 제4차 4자회담을 1999년 1월 18~2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4자가 합의한 「공동언론발표문」과 「분과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장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 추진

제1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1-1 북한간 협상

1.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경위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을 근거로 1992년 1월 IAEA가 북한에 임시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 핵활동에 대한 의심점이 발견된데서 비롯되었다. 즉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의 추정치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북한이 주장한 방사화학실험실은 사실상 핵재처리시설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1993년 3월 12일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은 1993년 두차례 회담(1단계: 1993.6.2~11, 2단계: 1993.7.14~19)을 가졌으며, 그 결과 북한은 NPT탈퇴를 유보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IAEA와의 협의 및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IAEA와의 협조를 거부하였고,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간 협상도 ‘서울 불바다’ 발언 등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결국 결렬되었다(1993.4.3).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북한은 UN제재가 취해질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IAEA 탈퇴로 맞섬으로써(1994.6.13),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의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충돌보다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간 3단계 고위급회담을 추진하였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우리측은 1994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한다면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고, 이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사업으로서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미-북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급진전되어 1994년 10월 21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구도인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즉, 북한이 안전성이 낮고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5MWe 원자로 등 핵관련시설을 동결(궁극적으로 해체)하고, 5MWe 원자로에서 추출한 사용후연료봉을 안전조치(봉인)한 후 제3국에 이전하는 등 핵개발 의도를 포기한다면 안전성이 높고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100만 KW급 2기)를 국제적 콘소시엄을 통해 북한에 유상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은 대북 경수로지원 등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위해 1995년 3월 9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였으며, KEDO는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여 경수로 공급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경수로공급협정」을 1995년 12월 15일 체결하였다. 이로써 대북경수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2. KEDO-북한간 후속의정서 협상

1995년 12월에 KEDO와 북한이 체결한 경수로공급협정은 공급범위, 북한의 상환조건, 인도 일정, 이행구조, 부지선정 및 조사, 북한의 핵동결 의무사항,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북한의 협조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KEDO-북한간 후속의 정서(protocol)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4월부터 KEDO와 북한은 후속의정서 협상을 개시하였다. 먼저 경수로사업 착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수로 근로자들에 대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문제, 북한으로의 출입과 통행·통신 관련문제들부터 협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6년 7월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를 통해 우리측 근로자들은 북한으로부터 체포·구금 등 여하한 형태의 관할권이나 집행처분에 예속되지 않고, 북한의 관습이나 정치적, 사회적 의무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통행 의정서」를 통해 우리측 인원 및 물자가 북한의 건설현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항공로 및 해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인원이 방북할 경우 비자발급 없이 KEDO 증명서만을 휴대하도록 하였다. 「통행 의정서」협상과 함께 진행된 「통신 의정서」에 따라 한국 전역과 경수로부지간에 자유로운 통신보장과 서신, 소포, 신서사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6년 7월부터는 부지인수 및 북한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제반원칙을 정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일시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측이 시인·사과한 후 다시 재개되어 1997년 1월 정식으로 「부지 의정서」, 「서비스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북한지역내에 270여만평 규모의 전용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북한 인력·물자, 금융서비스, 의료시설 등 북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7년 6월에는 북한이 경수로 대금을 미상환할 경우 벌칙금(penalty)을 정하는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북한이 경수로발전소 완공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KEDO는 이에 대한 벌칙금으로써 'KEDO측 조달비용+3%(또는 가능할 경우 2%)'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KEDO와 북한은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 협상을 1997년 두차례 가졌으나 타결되지 못하여 1998년 8월 10~27일까지 3차 의정서 협상을 뉴욕에서 속개하였다. 양측은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시운전 기간중 품질보증 활동 주체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시운전 기간중의 품질보증 활동 문제 이외에 북한 품질보증 활동 참가인원에 대한 특권·면제, 전기출력 미달시 보상문제 등이다.

의정서 협상은 형식적으로는 KEDO와 북한간의 협상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의제는 남북간의 통행을 위한 통행로 개설과 이에 따르는 제반 출입절차 문제, 남한 전역과 통신·우편 이용에 수반되는 절차상의 문제, 우리 근로자의 북한내에서의 신변보장 문제 등 대부분 남북문제의 성격이 짙었다. 또한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 노형이 한국표준형으로 결정된 만큼 그에 따르는 남북 전문가간의 기술적인 협의도 불가피하였다.

KEDO는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 협상과 별도로 「훈련 의정서」, 「인도일정 의정서」 협상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1998년 말 현재까지 진행된 의정서 협상 현황과 향후 협의할 잔여 의정서 협상은 다음과 같다.

3. KEDO-북한간 실무협상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해야 할 문제들 중 대부분의 실무적인 문제들은 부지현장의 KEDO 사무소,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 관계당국과 수시로 해결하고 있으나 보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 실무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공급협정 및 후속의정서 협상과는 별도로 KEDO와 북한은 기 합의된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실무협상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1997년에는 세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여 출입, 통관, 해상수송, 통신, 우편, 의료서비스 등 19개 분야의 광범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였다.

1998년에는 KEDO와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두차례 개최하였다. 특히 1998년 실무협상에서는 1997년 8월 부지준비공사 착공이후 공사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까지 포함한 제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였다.

1998년도 첫번째 실무협상은 1월 20~24일까지 북한의 묘향산 지역(향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KEDO측은 경수로인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물자 및 장비수송을 위한 해로, 즉 바지선 해로를 이용하여 소규모 인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북한은 「통행 의정서」 협상시 안보상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이를 수용하여 월 2회 정도 바지선 해로를 이용하여 소규모 우리측 인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KEDO측이 요청할 경우 북한이 제공하는 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과 이미 의정서를 통해 합의했던 도선구역도 투묘(投錨)가 가능하고 수심이 얕은 새로운 도선구역을 확정하였다. 이밖에도 기능공 임금수준 등 다양한 현안문제가 논의되었다.

5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향산호텔)된 2번째 실무협상에서는 경수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문제, 북한의 KEDO은행(외환은행) 이용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경수로 인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지인근의 관광지 방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북한이 단계적으로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경수로공사가 본격화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휴무일에 부지인근 마전휴양소나 해안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KEDO측은 이미 합의된 절차에 따라 북한이 부지에 설치하기로 한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조속히 설립하여 KEDO은행인 외환은행과 서비스 협력을 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다.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KEDO-북한간의 협상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제2절 부지준비공사

1. 착공 준비

경수로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 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합의됨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등 KEDO 집행이사국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착공 시기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7년 당시 한·미·일간의 재원분담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는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KEDO측은 재원이 확보되기까지 우선적으로 부지준비공사만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동 공사에 소요되는 대금 4,500만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용자형식으로 제공하였다. 부지준비공사는 경수로 건설예정지역의 부지를 정리(평토)하고, 숙소, 사무실,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과 통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1년 공사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KEDO는 1997년 하반기에 부지준비공사 착공을 목표로 공사진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의정서 및 각종 합의서에 따라 정해진 해로를 통한 물자 및 인원방북을 위해 1997년 7월 바지선의 시험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7월 말에는 착공식 준비 및 초기공사를 위한 물자를 투입하였다. 또한 경수로 인원의 영사업무와 KEDO 사무국과의 업무연락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측 2명, 미국측 2명, 일본측 1명으로 구성된 KEDO 금호사무소를 개설(7.28)하였다. 또한 8월에는 경수로 부지와의 통신 8회선이 개통되었고, 중국을 경유한 우편서비스도 개시하였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거쳐 KEDO는 1997년 8월 19일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착공식에는 한·미·일 정부대표와 KEDO 관계자 그리고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주)와 참여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과 북측의 경수로사업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CNN등을 통해 전세계에 중계되었다.

2. 부지준비공사 내용

1997년 8월 19일 착공 이후 한국측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현대건설, 대우, 동아건설, 한국중공업 등 협력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불도저,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50여대와 컨테이너, 건설기자재 3만 4천톤 정도의 물량이 투입되었다. 한국측에서는 150여명이 투입되었고 북측 역시 기 합의된 절차에 따라 근로자 100여명을 제공하였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북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1년간 진행된 공사를 통해 총 부지정지물량의 20%를 완료하였고, 부지간 도로개설 및 양방향과 부지간 도로보수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임시동력설비, 통신설비, 중기수리고, 유류저장고, 임시 공업용수 시설 등의 공사기반 시설도 마련하였다. 특히 근로자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해 숙소, 식당을 비롯하여 목욕탕, 의무실, 노래방, 독서실, 테니스장, 운동장 등을 마련하였고,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하여 한국에서 방영하는 케이블 방송 및 위성방송 등 20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과정에서 초기에는 상호간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다소 마찰이 있었다. 1997년 9월 김정일 사신이 게재된 노동신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북측이 한때 공사를 중지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은 경수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호 체제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1997년 11월 이후부터는 별다른 사고없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부지준비공사는 1998년 8월까지 약 1년 예정으로 추진되었으나 재원분담협상이 끝나지 않아 본공사 개시가 불가능해졌다. 재원분담협상이 타결되어 「재원분담결의안」을 정식 채택하려던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로켓발사체’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이 서명을 유보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EDO는 공사중단을 막기위해 부지준비공사 대금으로 확보한 4,500

만달러 중 잔여분을 이용하여 1998년 10월 15일까지 공사를 연장하여 후속공사를 추진하였으나 10월 15일 이후 본공사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미국, 일본, EU 등 KEDO집행이사국들은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998년 10월 16일부터 1999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 공급자신용방식(한전의 외상 공사)으로 약 846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다시 연장하였다.

제3절 재원분담협상

한·미·일 3국은 경수로사업 재원분담을 위해 우선 경수로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KEDO는 1996년 한전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수로사업의 개략사업비(ROM; Rough Order of Magnitude)를 1차로 산정케 하였고, 한전은 그 결과를 한·미·일 집행이사국에 통보하였다. 사업비 산정(1995년 12월 불변가, 환율 780원/\$ 기준)이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KEDO는 한전이 1차로 제출한 기준사업비 외에 건설기간중 물가상승비와 북한의 특수성에 기인한 예비비(contingency)를 포함하여 경수로 사업수행에 관련된 소요비용을 한전이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97년 9월 예상사업비를 재산정하여 KEDO에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미·일 3국이 최종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3국은 1997년 11월 25일 사업비 규모를 환율 1\$당 925원을 적용하여 약 51억 7,850만달러로 합의하였으며, 다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KEDO가 추가 조달하여 한전에 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수로 예상사업비의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KEDO 집행이사국은 각 국가별 재원분담을 위한 협상을 1997년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기존에 약속한 중심적 역할과 IMF구제금융 신청 등 어려운 국내경제 여건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초기에 우리정부는 이미 경수로사업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확보한 만큼 이에 걸맞게 경수로사업비의 2/3 부담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은 1,000억엔의 기여가 최종입장임을 견지하였으며, 미국은 중유비용과 폐연료봉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경수로사업비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은 미국의 사업비 기여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입장을 같이하고 미국의 사업비 기여를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사업비 기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족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재원분담협상은 초기에는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협상의 적기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이 기여금액을 1,000억엔(당시 기준 약 8.3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증액하고, 미국이 경수로사업에 대해 실질적 기여를 하는 한편 부족분조달에 있어서도 책임질 경우 경수로사업비의 70%를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한·미 정부의 계속적인 설득으로 일본은 10억달러 상당의 엔화를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미국은 향후 사업비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부족분 조달에 있어서도 지도적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측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1997년 11월 예상사업비 산정시 적용되었던 환율 925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새로운 전망환율에 맞추어 경수로예상사업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10여년간 적용될 기준환율을 1,100원으로 다시 적용하여 예상사업비를 당초 51억 7,850만달러에서 46억달러로 조정하였다. KEDO 집행이사국은 예상사업비 조정을 비롯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재원분담결의안’에 1998년 7월 21일 가서명하였다. 가서명 이후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친 후 동년 8월 31일 정식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서명당일 북한의 ‘로켓발사체’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이 서명을 보류함에 따라 「재원분담결의」 채택이 지연되다가 11월 9일에야 정식 채택되었다.

재원분담결의에 따른 각국별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측은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인 46억달러 기준으로 3조 5,420억원)를 기여하되 우리의 어려운 외환사정을 감안하여 원화로 기여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10억불 상당의 엔화인 1,165억엔을 기여하도록 하였다. EU는 KEDO가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KEDO 가입 당시 약속한 7,500만 ECU를 기여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증유비용 및 KEDO의 여타 소요자금에 대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KEDO 집행이사국이 기여하는 총액이 예상사업비 46억달러에 미달될 경우, KEDO 집행이사국은 부족분 조달을 위해 노력하되 특히 미국은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약속한 기여금액이 최대치(maximum)임을 명기함으로써 부족분 조달시 한·일측의 추가 기여가능성을 배제시켰다.

KEDO 집행이사국간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후속절차로서 KEDO와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하고, 각기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리측 분담분에 대한 국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수요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인해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형편인만큼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는 자금의 적기, 안정적인 조달 및 형평성에 부합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국이 재원조달을 위한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고 KEDO와 한전간 주계약이 체결되면 경수로사업은 본격적인 공사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경수로사업은 10여년간에 걸쳐 남북간 대규모의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 남북간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대북경수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이 민족공동발전계획의 첫 공동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및 협조가 필요하고, 아울러 경수로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제7장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제1절 통일교육의 활성화

1. 통일교육 체계와 방향 정립

가.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의 발간

통일 및 북한관련 교육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을 거쳐 ‘통일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환경은 질적으로 급변하였다. 즉 소련·동구공산권의 붕괴와 변혁, 독일의 통일, 한·중 수교,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체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통일이 가시권내에 진입함에 따라 통일교육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제6차 교육과정(1992~현재)에서 통일교육을 중점 교육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통일·안보교육이라는 명칭 대신 통일교육이란 명칭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통일교육이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이후 민족공동체의 삶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통일부는 1990년대 들어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피교육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기법을 개발·보급하고자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일선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95년판 통일교육지침서 발간 이래의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한편, 각급 교육현장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정부」-「통일교육기본방향」이라는 제하의 기본지침서를 발간(6,500부)하였다.

동 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각종 통일교육 활동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을 25개 주제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 내용설명과 함께 지도관점, 교수기법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동 지침서를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비롯하여 6,000여 기관·단체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나. 통일교육교재의 발간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 「북한문제 이해」와 부교재로 「통일문답」을 발간,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보급하여 통일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통일문제 이해」는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등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북한문제 이해」는 분야별 북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찬되었다. 또한 부교재인 「통일문답」은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북한의 정책노선 등 여러 가지 쟁점사

안에 대해 문답식의 자세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범국민적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여 보급되는 이 교재들은 각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되는 등 그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대비요원의 통일대비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교재로 통일연구 참고자료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고 통일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시청각교재를 개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다.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 입법 취지

한반도의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통일의 객관적 조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막상 그 구체적인 대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실적 과제로 등장한 통일문제를 부정적 시각으로 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범국민적 통일대비 태세 확립의 필요에 의해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행 통일교육은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문제의 중요성과 방대성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간부문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자치단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건실한 민간통일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는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입법취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지원법’이라는 명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 제정 경과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은 통일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준96.9 국무총리주재 국정좌담회)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통일부는 독일 등 분단국의 통일교육 사례와 사계전문가 및 교육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광범위한 국민여론의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준97.8.7~8.26) 및 공청회(준97.9.1)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준97.10.21)을 거쳐 동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법안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국회일정의 단축으로 다음해로 이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제199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준99.1.5), 동년 2월 5일에 공포·제정되었다.

(3) 주요 골자

첫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였다.(법 제3조)

둘째,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법 제4조),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법 제5조)

셋째, 정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

발·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조)

넷째, 통일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회교육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법 제7조),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며,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

다섯째, 통일교육전문가의 양성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9조)

여섯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법 제10조)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을 국민의 통일 의지 제고와 통일교육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로 삼아 올바른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 사회통일교육의 강화

가. 초청·순회교육 실시

통일교육원에서의 교육은 초청교육과 순회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전문·일반·특별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전문과정은 각 지역이나 기관, 학교 등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사회교육기관 교수요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문적이고 심층적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며, 기간은 3~5일이다.

일반과정은 공직자반, 사회단체간부반, 통일단체간부반, 자원교육반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함양 및 교육·계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3일 기준으로 편성되어 실시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평통자문위원반, 사회교육기관장반, 교장·교감반, 대학교수연찬반, 대학생반, 남북교류협력반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교류협력반에서는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이나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남북 현안문제와 방북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반 교육은 재학생 및 신입생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신입생반의 경우 전방견학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생들의 건전한 대북관 확립과 통일 의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초청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관·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초청교육보다는 단기간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대상자들의 교육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초청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실시됨에 따라 1998년 12월말 현재까지 금강산관광객 10,959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동해 현지에서 승선전 1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교육대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981년도부터 시작된 해외순회교육은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해외동포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해외동포사회에 대하여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최근 북한동향 등을 널리 알리고 평화통일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해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1995년에는 미국,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1996년에는 유럽, 러시아 등지에서, 1997년에는 호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지에서, 1998년에는 독립국가연합지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구주지역(영국, 스위스, 스웨덴), 일본지역(동경, 시가현, 가나가와현)에서 교민회 간부, 상사주재원, 종교인, 언론인, 유학생 등 해외동포사회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통일대비요원 양성

통일에 대비하여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요원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6년부터 통일 전후 과정에서 남북한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행정요원과 교육·홍보활동에 종사할 교육요원의 양성에 착수하였다.

교과내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남북관계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통일업무 기초분야와 북한실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북한이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각 분야별로 설명하는 통합업무 이해부분과 체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교과목이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통일행정요원 과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5급 및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3주간 교육을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요원 과정은 윤리·도덕·사회과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3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 12월 현재 교육이수자는 1996년에 59명, 1997년에 563명, 1998년에 통일행정관리요원(4~5급) 166명, 통일행정실무요원(6~7급) 574명, 통일교육요원 288명 등 총 1,650명에 이른다.

통일대비반의 교육대상과 관련 행정요원의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관련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요원은 사회·도덕·윤리과 중·고 교사뿐만이 아닌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전반에 통일대비 인적자원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97년도 교육 이수자 중 305명에 대해 1998년도에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연찬교육의 실시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의 통일대비 역량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다.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통일·북한문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을 반영토록 하며, 책자·슬라이드 등 시청각 교육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역량 강

화를 위해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위원, 사회교육기관 교수요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3. 학교통일교육의 지원

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제6차 교육과정 실시를 계기로 탈냉전의 대외적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 및 통일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2 도덕과 중3 사회과목에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게재하였으며, 고등학교 정치경제와 국민윤리 과목에도 1990년대 이후의 신국제질서 형성과 남북한 유엔가입, 각종 합의서 채택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 송정초등학교 등 32개 학교를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운영중에 있다. 이들 시범학교에는 통일·북한문제 관련 사진자료, 「통일문제 이해」 및 「북한이해」 등 책자, VTR 테이프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등 각종 자료를 지원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 대학사회 통일의식 함양

대학사회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하여 대학신입생 특별교육,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대학신입생 특별교육

대학신입생들이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현안에 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차교육은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총 5,400여명, 2차교육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총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3차교육은 1998년 12월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판문점·땅굴 견학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으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학인의 역할과 자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들 대학신입생들에게는 대학생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개발한 「평양캠퍼스 25시」 책자를 제공하여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모습과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민족의 진로와 전망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특별교양서로 「통일과 21세기」를 발간·보급하였다.

(2)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

대학사회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의 설치

를 권장하는 한편 연구소별 사업계획과 실적을 검토, 1981년부터 대학통일문제연구소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후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1998년 12월 현재 전국 80개 대학에 통일문제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통일문제연구소는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개최, 북한학강좌 교재개발, 학생발표·토론회 및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숍 개최 등 대학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교육·홍보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문제 학술세미나는 통일문제연구소의 기본사업으로 정착되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함양 등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학생발표·토론회는 지도교수 책임하에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통일의식의 함양과 참여도를 제고하여 대학사회에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편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숍은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소장들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자료의 교환으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12월 16일에 ‘민족화합과 민족발전’이라는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통일부는 대학통일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 16개 대학에 1,9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초로 하여 매년 지원대학의 수를 늘리고 있으며, 1998년에는 62개 대학에 3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한학 강좌 교재개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학 강좌는 서울대 등 72개 대학에 203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수강학생은 2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3)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매년 시의성있는 주제를 선정,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은 사계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입상자 전원에게는 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 전국 각 대학 도서관 및 통일문제연구소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통일홍보의 강화

1. 홍보자료 개발·보급

가. 정기간행물

통일부는 그동안 1970년 8월 창간된 월간 「국토통일」을 시작으로 통일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일백서」, 「남북대화」, 「주간북한동향」,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등 다양한 형태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배포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와 합의기반 조성에 노력해왔다. 1997년 5월부터는 대학신입생 등을 주요대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한실상 등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월간소식지 「한나라」를 발간·배포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겨레와 함께 하는 통일한마당」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4월호까지 발간·배포하였다.

나. 계기별 홍보자료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남북간 주요현안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및 지지기반의 확산을 위하여 주요계기 발생시마다 이에 대한 해설자료를 수시로 발간·배포하였다.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해설자료인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해별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과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의 대북정책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중요현안 발생시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1992년부터 「통일속보」를 발간하고 있다. 1998년에는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결과」 등 7회에 걸쳐 매호 2,000부씩 발간, 사회 각계 여론선도층에 배포하여 정부의 실사구시적 대북정책 추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시청각 홍보자료

정부의 통일방안 및 대북정책, 북한실상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73년 슬라이드 「민족통일의 길」을 시작으로 각종 시청각자료를 제작·보급하였다. 1985년부터는 남북관계 주요 계기 발생시마다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당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는 비디오 테이프 「북한 핵문제의 진상과 본질」을 제작·보급하였다. 1995년에는 「국민과 함께 가는 통일의 길」이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등에 배포하였으며, 1996년에는 바람직한 통일의 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하여」를 제작·보급하였다.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현실성·정당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을 해설한 강인덕 통일부장관 육성 녹음테이프 5,300개와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용 비디오테이프 3,850개를 제작·배포하였다.

2. 홍보활동의 전개

가. 언론을 통한 홍보

언론매체가 지니고 있는 대중 호소력과 정보전달력을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라디오

와 TV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라디오방송은 1994년부터 북한주민 및 중·리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KBS사회교육방송의 고정프로 「통일열차」에 매주 2회 출연자 및 통일칼럼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 4월부터는 통일부 실무자가 출연하여 「주간통일소식」과 「월간주변국동향」을 해설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1998년 6월부터 CBS 라디오방송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프로그램에 통일교육원 교수가 대담자로 출연하여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 있다. 1998년 7월부터는 주한외국인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케이블 TV방송인 아리랑TV의 통일프로그램 「Eye on North Korea」에 매주 1회 출연자 및 통일칼럼을 지원하였다. 또한 인천TV의 통일프로그램인 「통일마당 남남북녀」에도 1998년 9월부터 매주 1회 출연자와 방송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나.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왔다.

1992년 7월 6일 PC통신 천리안에 통일정책·북한실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PC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홍보와 국민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어 하이텔(1993년)과 유니텔(1996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해마다 그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PC통신 「통일·북한방」은 주간북한동향,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보도자료, 북한영화상영안내, 통일정책관련 자료 및 통일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C통신의 「통일·북한방」 운영을 통해 주된 이용자인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대북정책을 홍보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세대간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특정현안에 대한 집중홍보와 특히 젊은세대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기 위해 1996년부터 PC통신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여 왔다. 전자공청회는 통일관련 전문가들이 작성한 주제발표문을 PC통신상에 게재하고 이 주제문을 토대로 이용자들이 질의를 하면 전문가가 신속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로써 신세대층과 생생한 의견을 실시간에 교환하는 쌍방향 토론으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였다. 최근 약 400만명이 넘는 PC통신 가입자의 연령층이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이버매체를 이용한 홍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996년 12월에는 인터넷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http://www.](http://www.unikorea.go.kr)

[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를 개설, 통일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영문판으로 제공하고 있다.

「UniKorea」는 통일관련 정보·자료의 전파수단이자, 국민들의 통일여론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UniKorea」개설 이후 1998년말 현재 총 조회건수는 12만여회로 이용자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998년 한해동안의 접속건수는 8만6천여건으로, 이는 전년도와 비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UniKorea」의 또다른 특징은 여론수렴 매개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위해 국민과의 대화통로를 다양한 형태로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거나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통일대화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12월부터는 정부각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대표 홈페이지(<http://www.gcc.go.kr>)의 「정부정책포럼」에 통일관련 주제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niKorea」 초기화면에

링크시켜 놓았다. 그 밖에도 「공무원부조리신고」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 12월에는 통일·북한관련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 소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를 개통·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시간·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1994년 8월 1일 개설되어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절차, 남북간 물자교역현황, 남북교류 협력사업, 남북협력기금 현황 등에 대한 안내를 해왔던 자동전화음성정보시스템(ARS)은 PC 통신 및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 실효성이 감소되어 1998년 1월 22일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다. 시설물을 통한 홍보

통일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북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북한관은 1986년 서울북한관을 개관한 이래 1998년 12월말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4천 7백여만명(1998년 390여만명)이 관람하여 실증적인 통일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내용은 최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실태, 남북한 주요현안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전시패널, 와이드칼라, 터치스크린, 멀티비전 등 다양한 전시매체를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돕고자 716종 8,918점의 북한주민 생활용품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특히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분단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산 현장으로서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표상하는 상징시설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홍보 및 북한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패널 256개, 멀티슬라이드 37면, 터치스크린 676화면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북한실상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북한의류전 등 북한관련 기획전시를 7개 북한관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통일의를 고취시키고자 학생통일글짓기대회를 5개 북한관에서 개최하였고, 학생·교사·사회단체 등 3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북한관이 지역통일교육장으로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오늘의 북한」 홍보팸플렛 100,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북한관에 배포하였다.

북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를 돕기 위하여 북한자료센터(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 소재)를 설치, 통일·북한자료의 열람·대출뿐만 아니라 북한영화 상영과 북한실상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에는 57,176건의 일반자료와 26,145건의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1998년도의 이용자 수는 49,081명에 달한다. 동 센터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90년 3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북한영화상영의 날’로 정해 북한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1993년 12월에는 부산, 광주, 1995년 1월부터는 대구, 전주지역으로 확대상영하고 있으며, 대학생 단체관람 등 일반단체로부터도 신청을 받아 수시상영을 하는 등 1998년 12월 말까지 총 389회 33,494명(1998년 97회 8,956명)이 관람을 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 국내 통일·북한문제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정세 및 주민

생활 등에 대해 토론을 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 말까지 183회에 걸쳐 9,395명(1998년 20회 1,075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동해안 일대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강릉시 ‘통일안보 전시관’ 조성에 필요한 41억원의 예산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1998년에는 토목공사비 등 18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강릉시에 보조하여 전시관 건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라. 통일관련 이벤트 개최 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998년 3월 28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민족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대학생과 미술·조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그림거리’를 조성하였다. 통일그림거리는 통일예술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미술작품·조각작품·대형바닥그림 등 60여점을 전시하였다. 통일그림거리는 11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전시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내고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람직한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살고싶은 통일된 나라’, ‘남과 북 우리는 한겨레’라는 주제로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527명이 참가하는 ‘통일염원 아동그림전’을 개최하였다.

1998년 7월 이후에는 ‘북한교과서 전시회’를 서울 교보문고, 과천 서울랜드, 광주 신세계 백화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북한의 교육실상을 실증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전국적으로 연 40만명에 이르는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3. 해외 통일홍보

가.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홍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신속·정확히 전파하는 데 주력해왔다.

(1)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해설자료 등을 영·일·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로 발간·배포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을 설명한 팜플렛을 영·일·중·서반아어로 발간, 해당 언어 지역의 주요 기관 및 여론지도층에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1998년 7월에는 격월간 영문 뉴스레터인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창간하여 해외 정부기관 및 저명학자, 해외공관 및 동포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매회 2,000부를 발간·배포해 오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통일한

국」과 「Korea and World Affairs」를 각각 발간하여 해외동포와 외국연구기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배포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2) 국제방송 등을 통한 홍보

10개 국어로 방송되는 KBS 국제방송 ‘통일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에 통일문제 전문가의 칼럼원고(월2회)와 통일교육원 교수의 인터뷰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나. 해외동포에 대한 통일홍보

550만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동포사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1) 해외동포언론을 통한 홍보

15개국 47개 동포 신문사·방송사에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칼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대북정책을 해설한 영상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중·러지역 동포언론사에 ‘통일칼럼’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담겨진 의미와 정당성 및 호혜적 협력사업의 이점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동포사회와 주재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2) 해외동포 통일문제토론회 개최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세계한민족 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미북간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응하고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미주지역 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1993년부터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1998년에는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8차 세계한민족 통일문제토론회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6차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제3절 국민의견 수렴 및 민간통일활동의 지원

1. 여론조사 실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입장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적인 실천국면에 접

어듬에 따라 정책추진 전후단계에서 적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여론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1998년 한해동안 전개되었던 남북당국대표회담, 대북 소(牛) 및 경수로건설 지원, 금강산관광사업 등 정책사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잠수정 및 무장간첩침투사건은 대북정책 목표와 원칙의 적용방법과 정책추진시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1998년에는 일반국민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19차례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자문기구 운영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한다”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동포 대표를 자문위원에 위촉하고 있으며, 통일자문회의의 구성, 각종회의 준비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 처리,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협조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이 설치되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전체회의와 국내·해외 지역회의를 개최, 통일정책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는 한편,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 개진, 대북정책에 대한 건의안 채택 등 자문·건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1981년 6월 5일 창설 이후 1998년 12월까지 전체회의 9회, 지역회의 7회를 개최하였다.

(1)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의 구성·출범

민주평통이 1998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의 구성과 출범회의였다.

자문위원 위촉은 1998년 4월 22일 민주평통 의장인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평통사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자문위원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보강 위촉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1998년 6월 4일 새로 선출된 제3기 지방의회 의원과 각계 원로인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균형있게 안배하여 위촉했다.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지역대표위원은 제3기 지방의원 당선자 4,179명 중 자문위원 위촉을 동의한 인사 4,117명 △직능대표위원은 22개 직능분야에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인사 7,012명 △재외동포대표위원은 해외 58개국에 거주하는 동포사회 지도급인사 2,211명 등 총 1만 3,34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는 국내와 해외회의로 구분하여 각각 개최되었다.

국내위원 전체회의는 9월 23일 서울올림픽 제1경기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특히 전체회의에서는 ‘대북정책 추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등 3개의 정책건의안을 채택했다.

해외위원 회의는 해외 현지회의와 국내 초청회의로 각각 진행되었다. 현지회의는 7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북미주·동남아·대양주 등 15개 해외 지역협의회 소재지에서 각각 열렸다. 또 국내 초청회의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 일본, 중남미, 구주 등 5개 지역협의회 소속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민주평통에 부여된 주요기능의 하나인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건의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법정회의가 열렸다. 19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민주평통 운영방향 등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 ‘남북당국 대표회담의 과제’ 등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2월 8일 열린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 합동회의에서는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건전한 통일의식 제고방안’,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민화합의 과제’ 등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3개 분야의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한 중장기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각 분과위원회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총 20회 개최되었다. 특히 분과위원회 활동의 역동성을 진작하고 지역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교육홍보·지역협력·여성 등 3개 분과위원회는 지방에서 세미나를 겸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주평통 분과위원회는 남북간의 현안문제나 통일과정, 통일후에 예상되는 과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정책안 제시에 연구활동의 초점을 두어 왔다. 이를 위해 통일안보, 외교, 경제사회, 문화예술, 종교 등 각 분야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회의운영의 내실을 도모해왔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에 필요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민주평통 전문가토론회를 3회 개최하여 ‘대북정책에 포함시킬 실천과제’, ‘김정일시대의 대내외정책 변화전망과 대처방안’, ‘정경분리정책과 금강산관광사업 평가 및 대책’ 등을 정책 참고자료로 건의하였으며, ‘평화와 통일, 민족화해의 남북관계를 향하여’라는 대주제 아래 ‘햇볕정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신흥력체제 구상과 대책’에 관한 국내외 학자·전문가 통일문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의성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건의하였다.

이밖에도 남북교류협력,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대책 등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조사를 3회 가졌으며, ‘남북당국대표회담’, ‘햇볕정책’, ‘금강산관광사업’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민주평통 전문가모니터링을 10회 실시하는 등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이 굴절없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국민적 합의 창출 노력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과 분야별 통일역량 결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중앙 및 지역협의회 단위로 전개되는 이 활동은 크게 여론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통일정세 보고회’와 지역협의회를 중심으

로 한 일반주민 대상의 강연회와 토론회, 통일대화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국 26개 권역별로 여론선도층인 민주평통위원과 지역유지 등 15,662명을 대상으로 1998년도 통일정세 보고회를 열고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켰다. 또한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협의회 특별활동기간’을 설정하여 대국민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함은 물론, 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동모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특별활동은 지역별로 강연회 및 보고회, 읍·면·동 순회 통일문제 간담회, 북한이탈주민초청 북한실상설명회, 기업체 및 사회단체 순회강연회 등 총 735회에 걸쳐 2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밖에도 지역협의회 단위활동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동모형을 특화사업으로 개발,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열린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이 열린 ‘통일대화의 장’은 특히 초·중·고 교장 및 교감, 도덕·윤리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통일강좌’ 운영을 통해서도 정착되고 있다. 통일강좌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전주, 마산 등 7개 지역에서 대북정책 및 북한실상에 관한 최신 정보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열렸다.

이와 함께 각 직능분야별 활동이 자문위원 각자가 소속된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어왔다. 이북출신 자문위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과 특히 서울지역 여성분과위원회를 포함, 전국 15개 시·도별로 구성된 여성위원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초청 간담회와 여성위원간담회,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매결연 및 각종 성금지원 등 독자적인 사업과 다양한 이벤트사업을 기획, 추진했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성중심 통일대비활동은 북한연구회 운영, 여성간부위원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연구회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주제로 6월 26일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여성간부위원 세미나에서는 12월 8일과 9일 ‘통일과 여성단체교류’, ‘통일에 대비한 여성위원의 역할’ 등에 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 통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일후계세대들의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한 활동도 전개됐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16개 시·도에서 3,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각 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중·고교생 대북정책 설명회를 전국 1,090개 학교 65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협의회별로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42개교)하여 보다 내실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의 북한실상 등을 수록한 VTR 등 영상자료를 통한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현실감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각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통일글짓기 공모전, 웅변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왔다.

통일문제연구 및 대국민홍보에 필요한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자료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자문역량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한 자문위원 연찬은 23회 실시됐다. 수도권 신규위촉 위원과 협의회 홍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는 10회에 걸쳐 1,031명을 대상으로, 11개 권역별로 개최된 지역대표위원 연찬회는 11회 2,762명을 대상으로, 협의회장 및 지회장, 간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도 2회 실시되었다.

또한 통일관련 자료 지원을 위해 민주평통 사무국에서는 남북관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 추

진현황 등에 대한 해설과 국내외 자문위원 활동내용 등을 수록한 기관지 「민주평통」(연18회)을 발간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동향」, 「내외통신」, 「자문·건의총람」 등 통일문제 연구 및 대국민 홍보에 필요한 기타 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왔다.

(4)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충

국제적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구주·북미·일본 등 해외 14개 주요 도시에서 동포사회 지도층, 학계,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통일문제간담회를 실시했다.

1998년 11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해외 20개 지역협의회 회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민족 화해협력을 위한 해외통일운동의 활성화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재외동포 2세들에게 조국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해외동포 대학생 국내초청 연수회를 6월 29일부터 7월 4~6일까지의 일정으로 경주, 포항에서 개최하였다.

해외 58개국에 거주하는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강연회, 세미나, 주재국 유력인사 초청간담회 및 동포지도자 초청 간담회 등 제반활동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해외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전개하였다. 특히 재외동포 1.5~2세들의 통일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해외에 보급하기도 했다.

나. 통일고문회의, 통일정책 평가회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1969년 5월 12일에 제정된 「국토통일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934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토통일자문위원회’로 출발, 1970년 ‘국토통일고문회의’로 개칭(대통령령 제4841호)되고, 다시 1991년 2월 1일 ‘통일고문회의’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일고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 선양하며, 효율적인 통일정책의 협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통일고문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각계 원로·대표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강원용 의장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998년 11월 28일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통일고문회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일고문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통일고문회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현 통일고문 명단은 다음과 같다.

(2) 통일정책 평가회의

통일정책의 수립과 정책수행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0년 3월 1일 「통일정책평가단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통일정책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직제개정에 따른 4차례의 지침개정을 거쳐 현재 ‘통일정책평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정책평가회의’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추진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능력을 증진시키고 정책추진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

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고 매년 일부를 재위촉하고 있다.

(3) 정책자문위원회

통일부는 1981년부터 중요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1074호)에 근거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284호)에 따라 1998년 현재 6개 분과위(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회담, 교육홍보) 48명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3. 민간통일활동 지원

정부는 다양한 민간 통일관련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1990년대에는 많은 통일유관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 특색있는 단체들이 많아짐으로써 민간 통일활동이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주요단체들을 살펴보면 ‘한국발전연구원’,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국청년정책연구소’,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21세기통일봉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이다.

통일관련단체는 그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대중통일활동단체, 조사연구단체, 남북교류협력단체, 종교계 통일활동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형태로 보면 허가법인(재단, 사단)과 임의단체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1994년 3월 1일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전환시켰으며, 동 법률까지 1997년 3월 7일 폐지함으로써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킨 바 있다.

민간의 통일활동은 1995년과 1998년에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었다. 1995년은 광복 50주년·분단 50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계기로 민간 통일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확산시키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일부 재야단체의 ‘범청학련 통일대추진’, ‘범민족대회’ 등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1998년 정부는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및 공동행사 등을 추진하는 등 민간통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제정당·사회단체의 상설 범국민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민화협은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진 민간단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구심체로서 향후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1998년 10월 1일 민화협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통일문제 연구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 중 통일부 허가법인의 수는 1998년 12월 말 현재 총 60개로서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들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외에도 장관 표창·상장 수여,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일관련 자료배포 등을 지원하였다.

제8장 북한정세 평가

제1절 김정일 체제 출범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지 4년여만인 1998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687명의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였다. 이어 9월 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등 주요기관들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북한체제는 김일성 사후의 과도기를 지나 정상적인 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의 새 권력구조는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정무원’을 ‘내각’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내각 총리에게는 ‘정부를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내각기능에 종전의 ‘행정적 집행기관’ 외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 권한을 추가하였으며 각 부문별 ‘위원회’·‘부’를 ‘성(省)’으로, ‘위원장’ 및 ‘부장’을 ‘상(相)’으로 각각 개칭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국가 대표’ 지위와 ‘외교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고, 종전의 ‘국가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의 대부분을 ‘상임위원회’로 이관하였다. 또한 과거 ‘지방행정경제위원회’와 ‘지방인민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방 권력구조를 ‘지방인민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내각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지도기관 선거에서 내각총리에 홍성남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김영남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외형상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총리의 3각 지배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영남이 국방위원장 추대사에서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의 직책”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김정일 중심의 1인 통치체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출범한 체제에서 국방위원장직에 재추대된 김정일은 1997년 10월 8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것과 함께 북한을 유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었으며, 북한은 김일성 사후의 비정상적인 통치체제 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체제 안정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당총비서 선출의 권한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김정일이 이 회의를 통해 총비서로 추대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선출절차의 하자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실무적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당적인 일대 정치적 사업으로 당의 최고 영도자를 추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김정일은 그가 당 총비서가 되는 문제에서부터 기존의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향후 김정일체제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점은 1998년 9월 새로 출범한 통치체제의 성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새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외교권을 갖고, 내각 총리가 행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통치에 있어서는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모든 권한을 쥐게 됨으로써 북한체제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못한 체제가 되고 말았다. 즉 권한은 김정일이 가지면서 책임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내각 총리가 나누어 부담하는 비정상적인 체제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체제는 새롭게 출범하였으나 김정일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

을 제시하지 못한 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상징화하고 김일성의 유훈 관철만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통치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김정일은 당·군을 장악한 가운데 막후 통치와 군부중심 통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대내동향

북한은 1998년 8월 들어 ‘강성대국 건설’ 론을 본격 제시하고 이어 8월 31일 ‘인공위성’ 이라고 주장하는 ‘로켓발사체’를 쏘아 올림으로써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불어 넣으려 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 이은 ‘강성대국 건설’ 론은 결국 북한 주민들의 현실적 불만을 무마하고 이들을 경제건설에 내몰기 위한 슬로건이며,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이러한 슬로건을 계속 개발·제시하여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며 생산성 향상으로 유도하려 할 것이다.

경제면에서는 1990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자력성장의 잠재력을 상실하였으며, 에너지·원자재난 등의 심화로 공장가동률이 저하되어 제조업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하였다. 또한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1995년부터는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1998년 기간중 농업부문은 양호한 기상조건, 이모작 농사 확대실시 등에 힘입어 곡물 생산이 평년작 수준인 약 389만톤에 이르는 등 생산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절대 부족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광·공업부문은 중소형발전소의 대대적 건설추진에도 불구하고 공장가동률 저하로 생산은 오히려 부진하였다. 유통부문에서도 극심한 식량난·생필품난으로 당국의 경제통제능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져, 농민시장 등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이 확산되었으며 대외무역부문 역시 아시아 경제위기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거래 실적이 격감하였다.

북한은 정권 창건 50돌을 맞은 1998년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 ‘새로운 비약의 해’로 규정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을 역설하여 중공업 우선 발전과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을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이라고 강조하였으나 만성적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날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으며,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질서 및 규율이 이완되는 가운데 구조적 어려움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앞으로도 기존의 중공업 우선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식량난 해결 등 민생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중공업 편중의 경제구조, 생산력 저하 현상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단기간 내에 회생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이거나 경제 개방의 점진적 확대와 실용주의 노선 채택을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8년 9월의 개정헌법에서는 변화된 경제현실을 생존차원에서 일부 수용하여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개념 도입, 개인소유 허용범위 확대, 특허권 보장, 대외무역 주체에 대한 국가감독권 삭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 장려, 주민경제 생활과 관련 거주·여행의 자유 등의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식량난과 물자난으로 사회유동인구가 발생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사회일탈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체제유지의 근간인 관료사회에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가 심하고 무사안일, 보신주의 등 기강해이 현상도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일탈 현상과 자본주의 성향 유입, 주민들의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에 대처하여 북한은 재교육, 집회 등을 통한 체제결속 노력과 군의 역할 중시 등으로 사회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계형 범죄와 함께 관료들의 부패형 범죄 등 사회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부조리가 단절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부분적 개방에 따른 자본주의 성향 유입으로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사회통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의 향후 정책은 당분간 체제유지 및 안정기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기존 노선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정권이 직면하게 될 대내정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김정일체제의 안정적 기반 확보, 둘째, 외부로부터의 자본 및 인력 유입시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문제, 셋째, 경제난 타개를 통한 주민들의 물질생활 향상문제 등이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김정일의 리더십을 보전하기 위해 김정일을 ‘자연현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인’으로 상징조작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의 업적을 과시하고 가계우상화를 위해 문학·예술작품, 창작 및 조형물 등의 제작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급격한 세대교체 없이 노(老)·장(壯)·청(靑) 3세대간의 균형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혁명 1세대들의 자연사로 인한 공석을 점차 자신의 측근인물인 혁명2세대의 전문기술관료들을 중심으로 충원해 나갈 것이다. 특히 김정일체제 유지의 근간인 군부 인물의 영향력 확대를 당분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이완된 통제력의 강화를 위해 정치·사상 통제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일성 시대보다 김정일 체제에서 외부사조의 유입 방지 등 정치·사상적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은 최고지도자로서 김일성의 ‘유훈’을 충실히 받들어 나간다는 외양을 갖추면서 자신의 통치영역 확대와 독자성을 구축, 김일성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게 될 것이나, 경제정책의 실패, 군부 영향력의 확대 등 제약요인도 아울러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대외동향

북한은 1980년대 말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 해체 등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1994년 김일성 사후 수년간 계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한층 심화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첩일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중첩러 등 이전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발사체’를 쏘아올림으로써 국제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과는 강경대치하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중94.10.21)에 따른 중유공급을 지연시키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의 의무사항인 ‘핵동결’을 해제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이끌어 냈다. 이 회담(중98.8.21~9.5)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행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지하의혹시설물과 미사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 쌍방간 현안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로 중단되었던 북한의 핵연료봉 봉인작업이 재개되었고 대북 중유공급 및 추가 식량지원, 경수로 사업이 다시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의혹시설과 8월의 ‘로켓발사체’ 문제로 국제사회의 대북여론이 악화되고 미 의회 등 대북 강경입장이 대두되자 북한은 이에 강력히 맞대응함으로써 미·북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금창리 지하시설 성격규명과 관련, 11월에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방북하고 12월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두 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현장 방문과 보상요구 등 쟁점에 있어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성과없이 끝났다. 다만 양측은 계속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사일 회담, 테러지원국 제외문제 회담에서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였을 뿐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유해회담에서는 공동발굴작업을 진척시켜 5차례에 걸쳐 22구의 유해를 송환하였으며, 1991년 이후 중단되었던 유엔사와 장성급 회담도 세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북한이 일본인처(妻) 고향방문을 허용(중98.1.27~2.2)하고, 일본 자민당대표단이 방북(중98.3.28~31)하여 일본인 납치의혹문제 등 쌍방 수교교섭의 걸림돌이 되었던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북·일간 수교교섭이 재개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적십자회 대변인담화(중98.6.7)를 통해 ‘북한내 일본인 행불자 부재’를 발표하자, 일본의 대북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고향방문사업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8월의 ‘로켓발사체’ 사건 이후 일본내 대북여론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되고 일본이 대북강경조치 등을 잇따라 취하자, 북한도 전지역에 걸친 반일집회 및 단체성명 등으로 강력 대응함으로써 양측은 극한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한국과의 국교수립 이후 다소 불편한 관계를 가져왔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는 한·중수교 이전의 전통적인 혈맹관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상적인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급인사의 상호방문은 없었으나, 쌍방 정권창건일과 김정일 총비서 추대 및 국방위원장 재추대시 축전 교환, 중국의 홍수피해 발생시 김정일의 위로 전문 발송, 연례적인 군(軍)사절단 교환 등 의례적인 행사나 접촉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국측은 공식적으로 식량 10만톤, 비료 2만톤, 원유 8만톤을 무상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러시아와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치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김책제철소 코크스탄 공급 및 생산현대화 참여, 「항공협정서」 및 「운수협조의정서」 체결 등 경제적으로 일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양측 외무국장급 회의를 갖고 「신우호협력조약」 협상

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바 있으며, 1999~2000년 대외정치분야 ‘상호협력공동사업안’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재외공관을 30% 축소 조절한다는 방침

(췌98.3.14 외교부 대변인)에 따라 상당수 해외상주공관을 축소하고, 대사도 대폭 교체하였으나, 일부 공관은 기능과 인원을 보강함으로써 지역거점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수교(’98.8.10)한데 이어 유럽연합(EU)과 정치대화(췌98.12.2)를 갖는 등 지역주도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거 초청하는 한편,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가하여 식량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으로 대외이미지가 악화되고, 계속되는 경제활동 부진에 따라 대외지원에 대한 내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제유지와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당면목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지하핵 의혹시설 및 미사일 문제 협상을 통해 제재완화와 경제지원 등 최대한의 실리를 얻어내고 체제안전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반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 전력의 우위 등을 꾸준히 추구하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는 대결구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접근전략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바, 일본인 납치의혹 및 로켓발사 문제 등으로 쌍방의 강경대립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농후해짐에 따라 북한은 쌍방 공식 접촉보다는 일본 각계 지도급인사의 방북초청 등으로 강경여론의 완화를 유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면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러시아와는 우호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중국과는 중국측 경제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쌍방 정상회담이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와는 「신우호, 선린 및 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관계의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그들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경제난 타개에 필요한 지원 획득을 위해 비동맹권을 비롯하여 동남아권 및 서방세계와의 협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기구와의 관계강화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4절 대남동향

북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50여년간 견지해 온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1998년 개정 헌법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즉 당규약 전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공산화가 대남전략의 최종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변화됨이 없이 북한은 ‘연북화

해로의 정책전환’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하면서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제5차 북경 남북적십자대표접촉(쥬98.3.25~27), 북경 남북당국대표회담

(쥬98.4.11~17)과 같은 대북지원물자를 얻기 위한 일회성·기능성 회담에는 선별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98년 2월 18일 개최한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 발송하여 우리사회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한편, ‘8.15 통일대축전’ 개최 제의 등을 통해 친북집단인 ‘한국대학생총연합회’ (한총련)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의 입지강화와 조직재건을 위한 통일전선 공세를 전개하였다.

또한 북한은 동해상 잠수정 침투사건(쥬98.6.22), 무장간첩 침투사건

(쥬98.7.12), 강화도 해안의 간첩선 침투 시도사건(쥬98.11.20), 여수앞바다 반잠수정 침투사건(쥬98.12.17) 등 대남침투공작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그들의 대남전략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대남 교란을 위한 통일전선 공세와 무장도발을 자행하면서도 북한은 실리획득을 위해 학술·언론·문화·종교단체 및 인사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사업에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1998년 4월 18일 김정일은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① 민족자주원칙 견지, ② 애국애족·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대단결, ③ 남북관계 개선, ④ 외세·반통일세력 반대투쟁, ⑤ 온 민족의 접촉·대화와 연대·연합 강화라는 소위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김정일의 5대방침을 “김일성이 민족대단결을 위해 이룩한 업적과 경험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민족단합의 총서”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그 골격은 김일성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 정권의 공식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김일성 유훈통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은 남한당국을 배제한 채 통일전선 형성과 경제실리 획득을 위한 선별적인 민간 접촉·교류 그리고 남한사회 교란을 위한 침투공작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체제유지 차원에서의 ‘대남 적대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실리획득을 위한 선별적인 접촉·교류는 증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내외 여건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체제 생존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북포용정책의 유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북포용정책의 유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1. '98통일정책관련 주요 연설문

(1)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열시다

/ 1998.2.25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수립 50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영삼 전임 대통령, 「폰 바이체커」 독일 전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위원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취임식의 역사적인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가 마침내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입니다. 모든 영광과 축복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3년후면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됩니다. 21세기의 개막은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탄생한 인간혁명으로부터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산업혁명의 5대 혁명을 거쳐 인류는 이제 새로운 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유형의 자원이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산업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국민경제시대로부터 세계경제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값싸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전력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오는 만기외채를 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파국을 면하고 있는 것은 애국심으로 뭉친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EU국가 등 우방들의 도움 덕택입니다.

올 한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

다.

잘못은 지도자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애국심과 저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는 IMF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의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고,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편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 생활의 어려움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수출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난 3개월간 연속해서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애국심과 저력에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는 대화를 통한 대타협으로 국난극복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일을 이루어낸 노·사·정 대표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이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그리고 남북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정이 투명하게 되고 부정부패도 사라집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부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는 더욱 힘쓰겠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우리의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같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한결같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나라도 2차대전 후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를 같이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서 실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물가안정 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이 중시하되, 대기업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은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자가 다같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고 가장 값싼 상품을 만들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입니다. 이를 적극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대기업과 이미 합의한 5대 개혁, 즉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의 선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은 반드시 관철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업이 살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기개혁 노력도 엄격히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수출 못지 않게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외자유치야말로 외채를 갚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애국심과 의욕에 충만한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과 같이 올바른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오늘의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내년 후반부터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정신혁명말입니다.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통도 보람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해야 합니다. 땀도 같이 흘리고 열매도 함께 거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혁명과 바른 사회의 구현에 모든 것을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높은 교육수준과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의 정보화사회에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새 정부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고 대학입시에서도 컴퓨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되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지식과 인격과 체력을 똑같이 중요시하는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만란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의 세계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있는 높은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산업은 21세기의 기간산업입니다. 관광산업·회의체산업·영상산업·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입니다.

중산층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차별의 벽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희망이자 힘입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갈 것입니다.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지식정보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무역, 투자, 관광,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자주적 집단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미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집단안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 커녕 이산가족이 서로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1천3백여년간 통일을 유지해 온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의 대로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나이들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예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해외동포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동포들이 거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한국계로서 안정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열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민족수난의 굽이마다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구한 자랑스러운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내일への 도약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됩시다.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 6·25의 폐허에서 일어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국난을 극복합시다. 재도약을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높입니다.

(2) 3·1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룩합시다

/ 1998.3.1 김대중 대통령 제79주년 3·1절 기념사

남북한과 전세계에 계시는 7천만 동포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3·1절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축복의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3·1운동은 대한제국 말엽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의 정점이요, 자랑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을사조약 이후 우리 국민은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40년동안 국내에서, 그리고 시베리아·만주·중국 본토에서 일제에 무장투쟁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 식민지 역사에도 찾기 힘든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9년만에 일어난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

부를 상해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로 수립된 정부가 왕정복고를 지향한 정부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향한 민주공화국인 ‘민국’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1919년부터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귀환 때까지 26년간 일본의 중국 침략 와중에서, 중국 대륙을 떠돌면서도 끝내 대한민국의 이름을 수호한 이것 또한, 세계에서 예가 없는 놀라운 독립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같이 위대한 조상들의 열과 업적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부터 79년 후인 지난 2월 25일 이 나라에는 다시 한번 국민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50년에 걸친 권위주의와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국민에 의해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룩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가 온 것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시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을 기념하는 오늘이야말로 79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선열들과 우리 국민들의 거룩한 정신이 최초로 실현된 자랑스러운 날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3·1운동은 대화합의 절정을 이룬 국민적 총참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국 13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남녀노소, 상하귀천, 좌우사상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 즉, 민족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하나로 뭉쳐 일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대서사시였고 대행진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오늘의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내일예의 재도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뭉친 우리 국민의 자세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화합하고 동서가 화합하고 노소가 화합하고 남녀가 화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대화합 정신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발현되고 우리들의 조상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3·1운동의 국난극복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오늘날 금융위기라는 국가의 존폐가 걸린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다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노·사·정의 대타협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러한 대타협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심각한 이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러한 대타협을 이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자 여러분이 생활의 고통을 무릅쓰고 대타협에 동참한 그 애국심과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고통분담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생활의 안정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대통령으로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기업인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합의된 개혁을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개혁은 당장은 고통도 따르지만, 장차 여러분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정부기구의 축소와 인원의 감축, 봉급의 동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무원 사회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 없이는 국정을 바르게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애국심과 성실성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 공정한 지위안정, 생계보장, 이직자에 대한 사후대책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공무원, 경찰, 군인, 정부 산하기관 어디에서고 이제는 지연과 학연 혹은 이해관계 등 부조리한 관계에 의한 왜곡된 인사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양심과 성실성을 가지고 공무에 충실하는 것만이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조상들이 국난극복을 위해서 일치협력했듯이 이 나라의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노·사·정 3자가 우리 국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전위대로 나서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애국심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아프게 느끼는 것은 선열들의 민족독립투쟁을 위한 희생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이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만이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조차 이루지 못한 채, 상존하는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도 우리는 이산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인류 역사상 그 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조상 앞에 민망하고 세계를 향해 부끄러운 일입니까. 1300년간을 통일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적대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어떠한 변화를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통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변화는 남북 쌍방이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화해와 협력, 불가침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선 최소한도의 대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도의 교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다시 한번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의 상봉 내지는 생사확인만이라도 서둘러야겠습니다. 고향에 있는 그들은 천추의 한을 품고 매일같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불행은 막아야 합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적십자사 또는 정부기관간의 협의 등 어떠한 방식도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근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상호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수준의 대화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대화와 병행해서 4자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1정신을 간직합시다. 민족독립과 국민의 행복을 그토록 염원하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뜻을 기어이 받들고 실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합시다. 이 정부는 여러분이 만든 정부입니다. 3·1선열들에 의해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받드는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저는 국난을 극복하고 내일의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명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됩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세계 무대에서 자랑스러운 선진국가로 만듭시다. 3·1애국 선열들의 얼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7천만 민족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자유와 번영과 통일에의 믿음을 굳게 간직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3) ‘제2의 건국’에 동참합시다
/ 1998.8.15 제53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북한동포와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안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뜻 깊은 날을 경축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을 제창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국토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십수년간의 군사독재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 땅에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50년만에 이룩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국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주시민들이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의 기쁨을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선되자마자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은 오랫동안 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에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혹하고 험겨운 고난의 길이지만, 용기 있는 국민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가 「제2의 건국」을 통하여 추구

할 철학과 원리, 그리고 총체적 개혁의 미래상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저는 잠시도 쉴 틈없이 국가위기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외환위기가 일단 수습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환보유고와 더불어 환율과 금리도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사간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가 창설되어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노동, 그리고 공공부문의 4대 구조조정이 강도있게 진행중입니다.

또한 대ASEM 외교와 대미 외교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택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합니다. 과거의 유산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은 총체적으로 부실해졌고, 국제경쟁력은 취약해졌습니다. 외환위기는 필연적인 인재였습니다. 이 원인은 반드시 규명되어 앞날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방만한 몸집을 줄이고 거품을 빼며,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고도성장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건디기 힘든 시련임에 틀림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고통을 달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하루 빨리 이 시련의 터널을 벗어나는 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 오늘의 저효율과 고비용의 체제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오랫동안 관치경제에 눌러있던 미완의 시장경제를 「제2의 건국」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체제로 완성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지적으로 고급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크게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국민 개개인의 창조적 실천능력을 배양하는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혁명, 정보혁명, 첨단기술혁명, 벤처기업혁명, 그리고 문화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이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모두가 국난극복에 동참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새로운 출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저에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끌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에게 개혁의 선봉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 고난의 시기만은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의 저력을 다시 모아 「제2의 건국」을 시작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저의 신명을 다 바쳐

여러분이 명령한 바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가리킵니다.

「제2의 건국」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역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정부’가 표방해온 새로운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할 국정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기초로 그 실천 원리로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효율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오늘, 뜻깊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국」을 향한 장도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끌여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생활의 현장에서 지혜를 모아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속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일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제2의 건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내일의 승리를 기약하는 「제2의 건국운동」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정운영의 6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로부터 참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이룩하여 국민과 정부사이에 쌍방통행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중앙집권의 폐해를 도려내고 행정, 재정, 교육,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확대할 것입니다. 지방경찰제도도 실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저상시키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천명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망국적인 지역대립을 반드시 청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사와 지역발전의 공정한 처리가 철저히 이행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4천5백만 국민의 대통령이자 7천만민족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지역의 차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모든 정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효율 고비용의 국회제도도 크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제도도 공약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제의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도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1세기는 참여정치의 시대입니다. 국민이 모든 국정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2의 건국」의 정치적 기본목표입니다.

둘째는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흑자를 내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기업인만이 애국적 기업인으로서 존경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출금융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연내에 입법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아래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와 첨단기술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국가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생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체제를 바꾸기 위해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듯 관치경제의 폐습을 일소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제2의 건국」이 지향하는 경제적 목표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독선적 민족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WTO체제는 앞으로 수년내에 경제적 국경을 없앨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와 더불어 경쟁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같이 생존하고 같이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아직도 우리 한국을 ‘접근하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세계를 친구삼아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개선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좋은 이미지가말로 수출과 관광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저는 세계주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인재의 양성에도 적극 힘쓸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주의야말로 「제2의 건국」 아래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넷째는 물질위주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보와 과학기술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교육입국의 이상아래 오늘의 소모적인 교육을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꾸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덕·체 삼위일체의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입시지옥이 없는 대학입시제도를 실현하며 학부모의 과외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실력있는 학생만을 졸업시키고, 학벌주의도 타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직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마음껏 가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이제 활동을 시작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수립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더불어 21세기의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창달을 통한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이 곧 「제2의 건국」의 이상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중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룩해야 합니다.

고통과 성과의 공정한 분담에 바탕을 둔 신뢰는 「제2의 건국」의 기초입니다. 특히 저는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겠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노사 쌍방간에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적 무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노사문화의 사명을 띠고 노사정위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공정한 여건 속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양보로 노사간에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99년 말까지 쟁의가 없는 노사협력체제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금 10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해서 실업대책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예외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공공취로사업 또는 생계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확실히 약속합니다. 앞으로 모든 실업자에 대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의료혜택과 초중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반드시 실현하여, 직업을 갖지 못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제2의 건국」이 추구하는 신 노사문화 창조를 위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 온 남북대결주의를 넘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위에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제2의 건국」의 기치아래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문화, 종교 등 여러 분야의 교류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이미 천명한 대북정책의 3대원칙, 즉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은 상호 교류협력을 실현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북한 당국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에 화해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안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존공영의 관계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 개발과 농업개발을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권장할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할 것은 남북 양측이 모두 인도적 정신과 동포애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혈육에 대한 그리움 속에 애태우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남북간에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남북간 합의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하루속히 가동시켜야 합니다. 공동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앞서 우리는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상설 대화기구를 창설하여 성실한 대화의 장을 갖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북한이 원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철학과 자유·정의·효율의 3대 원리 아래,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 세계주의와 지식기반 국가의 실현, 신노사문화의 창조와 남북간의 교류협력 촉진 등 앞서 말씀드린 6대 국정과제의 실천을 「제2 건국」의 나아갈 길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제2의 건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국민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2 건국」의 기치 아래 세계 속의 선진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 그리고 깨어 있는 국민의 참여가 요망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난을 타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민족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합니다. 고생도 같이하고, 기쁨도 같이하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합시다.

저는 일생을 국민 여러분 곁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40년 넘게 감내해 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지식과 문화의 시대라면, 조상으로부터 유별난 교육열과 유구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민족이야말로 21세기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때의 인기보다 후세의 평가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21세기를 향한 「제2의 건국」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과 같이 2008년은 전면적인 개혁에 총력을 다하고, 2009년말까지는 IMF관리체제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우리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참여하는 민족의 재도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민주대한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싸우다가 먼저 가신 애국 영령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2. 통일정책관련 법규

● '남북교류협력관련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12.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1996.12.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등의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 4 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 6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협의회회의 의사)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12.8>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 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생략>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8호(교통세법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12.6	대통령령 제14819호(병역법시행령)
	1996. 5.31	대통령령 제15006호(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12.15	대통령령 제15539호(우편법시행령)
	1998.10.23	대통령령 제15920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5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장소)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관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준용규정등)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 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 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4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4면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3년의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횡수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의 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 세로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 · 서류 또는 자료
-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 · 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② 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등) ①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삭 제>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 역

제25조 <삭 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 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생략>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 3 조(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 5 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북한방문신고서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 7 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등) 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출입신고서등) 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및 별표·별지 생략>

(4)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3.12.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1996.12.12	법률 제5170호(재정융자특별회계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4 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개정 93.12.31>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 5 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제<93.12.31>

제 7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개정 93.12.31>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생략>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채권의 발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생략>

(6)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 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예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칙 생략>

● '북한이탈주민관련

-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령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보호기준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보호신청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

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결정등) ① 통일원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원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원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이탈혐의자
4.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① 제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본적·가족관계·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통일원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취업알선)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이탈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이탈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취적의 특례) ①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등) ①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원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정착금등의 지급) ①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거주지보호) ①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

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지원)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료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리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내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의 부담) ①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전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 4 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 조(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 8 조(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 9 조(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후원회의 설립준비) ① 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이사중에서 5인 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 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후원회의 설립 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7. 7.14	대통령령 제15436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4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 1 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의 구성)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대통령비서실·국가안전기획부·기획예산위원회·국무조정실·예산청·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98.12.31>

제 3 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기획부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 5 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 6 조(의견청취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간사) 협의회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해당위원이 된다.

제 8 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회의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회의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회의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한다.

제12조(임시보호등의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 및 기간등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한다.

제13조(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①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개정 98.12.31>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제15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제5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입국교섭등) ①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이를 정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방법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12.31>

제24조(협조요청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각각 정한다.

제26조(등록대장)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따로이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각각 정한다.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인정절차)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교육등의 기회제공)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데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적응교육)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영농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직업훈련신청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가계보조수당·가족수당·교통비·식비등을 지급한다.<신설 98.12.31>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협조한다.

제34조(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

능소지 여부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취업알선)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노동부장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송부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신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마친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조하여 그가 훈련받은 직종과 관련되는 분야에 취업을 알선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법인
3.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
4.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단체
5.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 기타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민간단체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 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98.12.31>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가” 지역 : 특별시지역
2. “나” 지역 : 광역시 및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지역
3. “다” 지역 : “가” 지역 및 “나” 지역 이외의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

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개정 98.12.31>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8.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기관총·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실태조사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제44조(입학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개정 98.12.31>

1.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2.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미만의 자
3. 국내의 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사립의 경우에는 육성회비)를 면제한다.<개정 98.12.31>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4년(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8.12.31>

④ 삭제 <98.12.31>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8.12.31>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가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이상인 경우

제49조(권한의 위임)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부 칙 <97.7.14>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법령의 폐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 (다른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중 “귀순한 장교”를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부 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2호

제 1 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 3 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4 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①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남북관계 합의 문건

(1) 7·4 남북공동성명

/ 1972.7.4 발효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점을 보였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1972년 7월 4일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 1992.2.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분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

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1992.2.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1992.2.19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장 내부분쟁 불간섭

-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 제8조 남과 북은 언론·뼈라 및 그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

언' 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 6 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의 '제1장 남북화해' 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 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 8 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 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1992.2.19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무력불사용

제 1 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 3 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 2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

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 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 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 6 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6)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1992.2.19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 당사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 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관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 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 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 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7)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 1992.5.7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 3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 5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8)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1995.3.9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합의문(이하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확산 및 기타 조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의 최상의 중요성에 유념하고,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부합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기본합의문에 상정된 바와 같이 관련국간 협력을 조정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조달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설립된다.

제 2 조

가.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구와 북한간에 체결될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기의 한국표준형원자로로 구성되는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2)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가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흑연감속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신

하는 대체에너지의 공급

(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기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조치의 이행

나. 기구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확보를 목표로 하여 그 목적을 수행한다.

제 3 조

상기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나.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자금 수령, 그러한 자금의 관리와 지출 및 동 자기에 대한 이자의 기구의 목적을 위한 보유

다.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현물기여의 수령

라. 기구가 제공하는 경수로사업과 기타 재화 및 용역의 상환으로서 북한이 제공하는 자금 및 기타 보상의 수령

마. 기구가 수령하거나 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합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시설, 장비 또는 재화의 취득

사.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차관협정을 포함한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아. 원자력 안전성 증진활동을 포함하여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는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당국 및 기타 공공단체, 국내 및 국제기관 그리고 사적 당사자 등과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지원

자. 기구의 수령액·자금·계정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 및 이로 인한 수익의 기구의 재정적 의무에 따른 분배, 그리고 기구의 결정에 따른 잔여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기구의 각 회원국 기여정도에 상응하는 균등한 방식의 분배

차.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타 권한의 행사

제 4 조

가. 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구의 활동은 북한이 북한과 기구간의 모든 협정규정을 준수하고 기본합의문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기구는 기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또는 기술이 전적으로 동 사업을 위해서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제 5 조

- 가. 기구의 원회원국은 대한민국, 일본국 및 미합중국(이하 ‘원회원국’ 이라 한다)이다.
- 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타 국가도 집행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 제14조 나항의 절차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국’ 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제 6 조

- 가.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집행이사회에 있다.
- 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와 승인을 얻은 기타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승인은 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를 기초로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회원국 승인과 관련한 규정 및 조건은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된다.
- 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 라.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 마. 집행이사회회의 결정은 집행이사회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합의의 도달이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투표가 요구될 때 집행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회원(이하 ‘집행이사회 회원’ 이라 한다)은 집행이사회 대표에 의하여 1개의 투표를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 바.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 사.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 가. 총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
- 나. 총회는 제12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 다. 총회의 임시회의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회의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 라.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

- 가. 기구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대표한다. 사무총장은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 나. 사무총장은 기구의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집행이사회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본부 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 연례 예산안의 준비, 재원 조달 그리고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의 승인, 작성 및 집행을 포함한 기구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한다.

사무총장은 상기 권한을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2명의 사무차장으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2명의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2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있다. 급여를 포함한 이들의 고용조건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그들의 임기만료 이전에 해고될 수 있다.

마.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지침과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대신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계약을 작성하며 기타 재정적 의무를 부담할 권한을 가진다. 단, 그러한 사업·계약 및 재정적 의무가 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에 기초하여 집행이사회가 결정적 특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에 사전승인을 받는다.

바.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에 승인가에 직원의 직책과 급여를 포함한 고용조건을 수립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를 그러한 직책에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해고한다. 사무총장은 경수로 사업을 포함한 기구(KEDO)의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역할 및 기여도와 최상 수준의 성실성, 효율성 및 기술적 능력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원회원국 및 기타 집행이사회 회원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직원을 임명한다.

사.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 기구의 활동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에 조치를 요하는 사안은 집행이사회가 즉시 주지하도록 한다.

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의 조언을 받아 이 협정과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을 준비한다. 규칙 및 규정은 시행 이전에 집행이사회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자.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부나 또는 기구 이외의 어떠한 기관의 지시도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오로지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직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9 조

가. 집행이사회는 기구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하도록 제의된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무총장과 집행이사회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문위원회는 경수로 사업, 대체에너지의 공급사업 및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다.

나. 각 자문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원회원국과 다른 회원국 대표들을 포함한다.

다. 자문위원회의 소집시기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사무총장은 각 자문위원회가 소관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며,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유념한다.

제 10 조

가.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집행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기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회원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기구에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는 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나 기구의 계약자에 대한 지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여는 현금예치, 조건부 증서, 신용장, 약속어음, 또는 기구와 기여자간 합의하는 기타 법적 수단과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기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에서의 기여를 구할 수 있다.

라. 기구는 회원국이나 기타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계정을 설치한다. 동 계정은 특정사업과 기구운영을 위하여 확보된 자금을 위한 독립계정을 포함한다. 그러한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은 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재투자된다. 잉여자금은 제3조 자항에 규정된 대로 분배된다.

제 11 조

가. 회원국은 기구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기구나 기구의 계약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기구는 자신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은 기구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현물기여의 가치산정 업무를 담당한다. 회원국은 현물기여에 관한 정기보고서 제출과 동 기여의 가치확인에 필요한 기록에 대한 접근 허용등을 통하여 가치산정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협조한다.

라. 현물기여의 가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제 12 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동 보고서는 경수로 사업 및 기타 사업의 현황에 관한 기술, 활동계획과 집행실적의 비교, 기구의 계정에 대한 회계검사보고서등을 포함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회원국들에게 연례보고서를 배포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13 조

가. 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능력, 특히 (1)계약의 체결, (2)부동산의 차용과 임차, (3)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4)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기구가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다.

나. 어떤 회원국도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나 기구참여를 이유로 기구의 작위, 부작위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회원국이 기구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적으로 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 회원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라. 회원국 영역에서의 이 협정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예산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14 조

가. 이 협정은 원회원국들이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나. 제5조 나항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다.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 회원 전원의 서면합의 또는 만일 이같은 합의에의 도달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이사회 회원 과반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종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개정은 서면 개정합의문이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90일후에 발효된다. 동 서면 합의문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집행이사회 회원도 동 합의문의 사무총장에의 등록과 개정발효사이의 기간중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통보 접수일자에 발효한다.

제 15 조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통보를 접수한 지 90일 후부터 유효하다.

1995년 3월 9일 뉴욕에서 영어로 3부를 작성하였다.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공급에 관한 협정)
/ 1995.12.1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 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이라 한다)는,

KEDO가 1994년 10월 21일의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기본합의문(이하 '미·북 기본합의문' 이라 한다)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이하 '경수로사업' 이라 한다)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임을 인식하고,

미·북 기본합의문과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미국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과 주접촉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하며,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수락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공급범위

1. KEDO는 북한에 2개 냉각재유로를 가진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을 일괄 도급방식으로 제공한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 현재 생산중인 것으로 한다.
2.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공급범위를 부담한다. 북한은 협정 제2부속서에 명시된 제반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부담한다.
3. 경수로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규제 및 기술수준에 상당하며, 이 조 1항에 언급된 노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규제 및 기술기준은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운전, 운전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에도 적용된다.

제 2 조 상환조건

1.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의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며 북한은 이 비용을 장기, 무이자 방식으로 상환한다.
2. 북한의 상환금액은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되, 이러한 결정은 경수로사업의 상업 공급계약(주계약)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기술명세서, 경수로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그리고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과 관련한 공급계약에 따라 KEDO가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양측의 검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이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임무 및 품목에 대해 북한은 추가비용의 책임이 없으나, 북한의 작위 또는 귀책사유 있는 부작위로서 야기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지며, 이 경우 경수로사업에 관하여 KEDO가 지불하여야 할 실제 추가비용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금액만큼 상환금액이 증액된다.
3. 북한은 KEDO에 각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3년 거치 간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 분할 상환한다. 북한은 KEDO에 현금,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로 상환(그러한 상환은 이하 '현물상환' 이라 한다)하는 경우, 현물상환의 가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산출을 위해 합의된 방식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4. 상환금액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 정한다.

제 3 조 인도일정

1. KEDO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수로사업의 인도일정을 수립한다. 북한이 제2부속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관련조치의 일정은, 이러한 조치가 2003년까지 이행되고 경수로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경수로사업 인도일정에 포함된다.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 조건부이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경수로 발전소의 '완공' 이라 함은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시험의 완료를 말한다. 각 발전소 완공시에 북한은 KEDO에 대해

각 발전소별로 인수증을 발급한다.

3. 경수로사업의 인도 및 이 협정 제3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일정에 관한 상세사항과 필요한 일정조건을 위한 상호합의된 절차 및 이 협정 제4부속서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의 완료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4 조 이행구조

1. 북한은 하나의 북한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에게 경수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행구조에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KEDO는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하며, 이 주계약자와 상업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하나의 미국기업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KEDO가 경수로사업의 전반적 이행을 감리하는 것을 보좌한다.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KEDO가 선정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수로사업 참여자들 사이의 효율적인 접촉과 협력을 포함하여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촉진한다.

4.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서면 교신은 영어와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며, 기존 문서 및 자료는 원래의 언어로 사용 또는 전달될 수 있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사업현장외에, 경수로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KEDO와 북한이 합의한 바에 따라 인근항구 또는 공항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지의 다른 지역에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6. 북한은 KEDO에 독립된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KEDO 및 그 직원에게 KEDO의 위임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북한 영역 내에서의 법적지위와 특권 및 면제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7.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들 모든 인원에 대하여 적절한 영사보호가 허용된다. 필요한 영사보호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8. KEDO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은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될 내용에 따라 북한의 관련법을 존중하며, 아울러 항상 품위를 지키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행동하도록 한다.

9.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건설장비 및 잔여물자를 통관절차에 따라 재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부지선정 및 조사

1. KEDO는 부지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합한 부지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하부구조 개선사항을 포함한 경수로 발전소의 시공과 운전을 위한 제반 요건을 확인하기 위

하여 우선적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금호리 일원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이 조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북한은 KEDO와 협조하고 동지역을 대상으로 기 수행된 조사결과를 포함한 관련정보를 KEDO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KEDO는 추가적인 정보획득 또는 필요한 부지조사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부지접근과 부지사용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6 조 품질보장 및 보증

1. KEDO는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품질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품질보장계획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품질보장계획은 설계, 자재, 장비와 부품의 제작 및 조립, 그리고 시공품질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한다.

2. KEDO는 북한에 품질보장 계획을 적절히 문서로 제공하며, 북한은 적절한 검사와 시험, 시운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북한측 검토가 포함될 품질보장계획의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KEDO는 경수로 발전소 각 호기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발전용량이 약 1,000메가와트가 되도록 보장한다. KEDO는 관련 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제공하는 주요 부품이 신품이며, 완공후 2년동안 그러나 당해 주요부품의 선적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설계·제작기술·자재면에서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각 경수로발전소의 최초 장전을 위한 경수로 연료는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보장된다. KEDO는 경수로사업의 토목공사가 설계, 제작기술, 자재면에서 결함이 없음을 완공후 2년간 보증한다.

4. 상기 언급된 사항과 보증서 내용 및 그 발급과 수령에 관한 절차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7 조 훈 련

1. KEDO는 북한의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포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동 훈련은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가^가적 조기에 실시된다. 북한은 동 훈련계획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자격있는 후보자를 제공하는 것을 책임진다.

2. 훈련계획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 8 조 운전 및 유지보수

1.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의 상업계약을 통하여, 이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을 제외한 경수로 연료를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2.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의 상업계약을 통하여, 협정 제1부속서에 따른 제공을 예비부품, 마모성부품, 소모성 자재, 특수공구와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 데 협력한다. KEDO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북한은 경수로의 사용 후 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적절한 상업계약을 통해 동 사용 후 연료의 인출 후,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
4. 경수로 사용 후 연료의 북한 밖으로의 이전을 위한 필요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9조 서비스

1.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신청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그리고 무료로 처리한다. 이러한 승인에는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이 발급하는 모든 허가, 통관, 입국 및 기타 허가, 각종 면허, 부지접근권 및 부지인도 협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승인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이상으로 지체되거나 거부될 경우, 북한은 KEDO에 그 이유를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일정 및 비용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
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의 조세, 관세 및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각종 부과금과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으며 수용조치로부터도 면제된다.
3.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현장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되며, 사업현장으로의 출입을 위해 항공로와 해로를 포함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통행료가 고려된다.
4.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인원이 항만 서비스, 수송, 노동력, 식수, 음식, 부지밖 숙박시설 및 사무실, 통신, 연료, 전력, 자재, 의료서비스, 환전 및 기타 금융서비스, 기타 생활 및 작업에 필요한 편의설비를 공정한 가격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이들이 파견하는 인원은 북한내의 이용가능한 통신수단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이용이 허용된다. 이에 부가하여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각 장비설치 요청에 대한 신속한 사안별 검토를 거쳐 북한의 통신관련규정에 따라 사무소에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6. 상기 서비스 관련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별도 의정서에서 적절히 정한다.

제10조 핵안전 및 규제

1. KEDO는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과 시운전이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2. 북한은 부지조사 완료시 KEDO에 부지인도증을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부지조사에 대한 검토와 경수로발전소가 제1조 제3항의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발전소 기초 굴착작업 이전에 KEDO에 건설허가를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경수로발전소의 최종설계가 포함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와 핵연료장입전 시운전시험 결과에 기초하여 최초 연료장전

이전에 KEDO에 시운전 허가를 발급한다. 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운영허가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KEDO는 핵연료장입후 시운전시험 결과와 운전요원에 대한 훈련기록을 북한에 제공한다. KEDO는 안전성분석보고서, 규제 및 기술기준에 관한 정도 등 필요정보와 함께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결정에 필요하다고 KEDO가 인정하는 기타 문서를 북한에 신속히 제공한다. 북한은 사업일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허가를 적기에 발급하는 것을 보장한다.

3. 북한은 경수로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 적절한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그리고 제8조 제3항에 일치하는 사용 후 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원자력 규제기준과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4. 핵연료집합체 선적에 앞서 북한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1994. 9. 20,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1986. 9. 26,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1986. 9. 26, 비엔나에서 채택) 및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1980. 3. 3, 비엔나 및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의 규정을 준수한다.

5. 경수로발전소 완공 후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점검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점검결과를 적절히 고려한다. 안전점검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6. 핵 비상사태나 사고발생시 북한은 KEDO,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가 파견한 인원이 안전 우려 범위를 확정하고 안전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현장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제11조 핵사고 책임

1.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와 관련된(1963년 5월 21일자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정의된) 핵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북한내에서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법적장치는 절대책임주의 원칙에 의거, 핵사고 발생시 운영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한다. 북한은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2. 경수로발전소와 관련한 핵사고로 인해 북한영역 내·외에서 핵피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제3자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이유로 법원에 제기하는 배상청구로부터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은 배상협정을 체결하며, 핵사고 책임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상장치를 확보한다. 배상협정, 보험 및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3. 북한은 핵피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은 어떤 특정한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어느 일방이 면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북한은 관련 핵피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인의 중과실에 기인하였거나, 피해인의 가해의도에 따라 행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운영자가 입증할 경우에는 피해인에 대

한 손해배상 의무로부터 운영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시키도록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핵사고에 따른 피해가 고의성이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그러한 고의성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가진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자’ 또는 ‘개인’ 이라 함은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년 5월 21일, 비엔나에서 채택)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12조 지적재산

1.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와 동 정보를 포함하는 물건이나 문서(이하 함께 ‘지적재산’ 이라 한다)는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귀속되며, 비밀이 보호된다.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며, 협정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른 관행을 포함한 국제규범에 따라 이를 이용한다는 데 합의한다.
2.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도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상대방의 장비나 기술을 복제, 복사 또는 재생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 장

1.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국제관행에 따라 정의됨)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핵폭발과 무관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이 적절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경수로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3.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이 유용수명기간동안 국제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를 제공한다.
4.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수명기간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5.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또는 경수로사업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핵물질에 이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어떠한 경우에도 재처리하거나 그 농축도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6.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장비나 기술, 핵물질 또는 이들에 사용되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북한 영역밖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상기에 언급된 보장들은, 해당 KEDO회원국과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수로사업을 위해 핵공급국 그룹의 수출통제품목으로 규제되는 품목을 북한에 공급하는 KEDO회원국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북한측의 보장으로 보완될 수 있다.

제14조 불가항력

어느 일방의 이행이 국제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 그러한 지연은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사건은 이 협정에서 ‘불가항력’ 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의무이행이 지연되는 측은 그러한 사건 발생후 지연사실을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고 의무이행의 지연과 이로 인한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양측은 이에 따른 대체방안과 경수로사업 일정의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및 어느 측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즉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한다.

제15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KEDO와 북한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KEDO와 북한은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양측이 선정한 각 3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상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일방이 요청하고 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KEDO와 북한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여 이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이 될 제3의 재판관 1인을 선정한다. 만일 중재에 관한 상호 합의후 30일내에 KEDO 또는 북한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KEDO 또는 북한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2명의 재판관 선정 후 30일내에 제3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재판소의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이며, 모든 결정은 재판관 2명의 의견일치를 필요로 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KEDO와 북한을 기속한다. 양측은 자신이 선임한 재판관과 중재재판 임무수행비용과 기타 중재재판소 비용은 양측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6조 불이행시 조치

1. KEDO와 북한은 이 협정의 기본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어느 일방이 이 협정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경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는 금액 및 재정적 손실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상황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벌칙금을 산정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벌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17조 개 정

1. 이 협정은 협정당사자간의 서면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협정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18조 발 효

1. 이 협정은 KEDO와 북한간의 국제적 합의로서 국제법에 따라 양당사자를 기속한다.
2.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는 각 의정서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제 1 부 속 서

KEDO가 제공하여야 할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경수로발전소의 공급범위는 다음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된다.

1. 부지조사
2. 부지정리, 평토, 부지내 공사에 필요한 전력 및 경수로 발전소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내 용수공급으로 이루어지는 부지 준비
3. KEDO가 경수로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이며 전적으로 이를 위해서만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하부구조, 이러한 하부구조는 부지내 도로, 부지에서 부지밖 도로까지의 연결도로, 바지선 하역시설과 부지간 도로, 수중보를 포함한 취수시설과 수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를 위한 주거시설 및 관련시설로 구성된다.
4. 공사일정을 포함한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문서
5. KEDO가 2기의 경수로발전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발전 체계, 시설, 건물, 구조물, 기기, 보조시설 외에 실험실, 측정기기, 공장기계실을 포함
6. 발전소 2기를 위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10년 저장 시설
7. 발전소 인수시까지의 요구되는 모든 시험
8.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KEDO가 발전소를 2년간 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부품, 마모성 부품, 소모성 자재 및 특수공구
9. 초기 운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연료봉을 포함한 각 경수로의 최초장전용 핵연료
10. 완전한 범위의 모의훈련대의 제공을 포함하여 KEDO와 계약자가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실시하는 경수로발전소 운전과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훈련계획

11.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1호기 완공후 1년간 이 발전소의 운전과 유지보수에 KEDO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지원서비스

12. 전반적인 사업관리

제 2 부 속 서

북한이 그 책임을 지는 이 협정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임무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거주민 소개, 현존 구조물 및 시설의 이전을 포함한 경수로사업용 부지(육지 및 해상) 확보
2.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의 제공 또는 접근
3. 2기의 경수로발전의 시운전을 위해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4. 경수로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수송하기 위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지에 인접한 기존의 항구, 철도 및 공항시설에 대한 접근
5. 골재 및 채석장 확보
6.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의 경수로 부지로 연결하는 통신 선로
7. 시운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KEDO가 훈련할 자질있는 운전요원

제 3 부 속 서

이 협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바 대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허용한다.
2.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계속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동결상태 감시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3. 북한은 새로운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다.
4. 미국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부품의 인도전에 원자력의 평화적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이 양자협정은 협정의 제4부속서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된 후에 이행된다. 이 협정의 목적상 핵심부품이라함은 원자력공급국 그룹 수출통제목록에 따라 규제되는 부품을 말한다.

5.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영구 처분을 위하여 계속 협조한다.
6. 북한은 이 협정이 서명되면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 및 일반사찰의 재개를 허용한다.

7.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 부품의 인도이전에, 국제 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 이행한다.
8. 경수로 발전소 1호기가 완료되면 북한은 동결된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를 시작하여 경수로발전소 2호기 완료시까지 이러한 해체작업을 완료한다.
9.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시작하면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로부터 추출된 사용 후 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하여 이 연료의 북한으로부터의 이전이 시작되며, 이러한 작업은 경수로 발전소 1호기 완공시까지 완료된다.

제 4 부 속 서

이 협정의 제3조 제3항에 언급된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다 상세한 정의는 제3조 제3항에 언급된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1. 경수로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2. 부지준비 완료, 굴착, 경수로사업 건설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완료
3. 선정된 부지에 대한 발전소 초기 설계의 완료
4. 사업 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 주요 원자로기기의 사양서 작성 및 제작
5. 사업 계획과 일정에 따른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의 주요 비핵부품 인도
6. 사업 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단계에 부합되는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 터빈용 건물과 기타 부속건물의 건설
7. 핵중기공급계통의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경수로발전소 제1호기 원자로 건물과 격납 구조물의 건설
8. 사업공정에 따른 경수로발전소 제2호기의 토목공사와 기기제작 및 인도

4. 통일정책관련 주요 선언 및 제의

(1) 『평화통일 구상』 선언

/ 1970.8.15 박정희 대통령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

친애하는 국내외 5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비할데 없는 감격과 환희 속에 맞이했던 조국광복, 그날로부터 꼭 4반 세기가 되는 날입니다.

25년전 전국 방방곡곡의 거리 거리에서 태극기의 물결을 수 놓으며 자유해방 만세의 환호성을 소리높이 외치던 그날, 우리 온 겨레는 정녕 티끌만한 사심도 타산도 없는 순수한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다함께 우리 민족재기의 출발을 기뻐하였고 우리 역사의 새로운 광명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 억압과 예속에서 벗어나고 잃었던 조국을 되찾아,

” 다시는, 조상들이 당했던 불우한 처지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하며,

” 새로운 번영의 민족국가를 건설해 보겠다는 푸른 꿈을 펼쳐 보던, 그날의 벽찬 감격과 불타오르던 정열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될 불멸의 봉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로부터 어언 2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은 한 인간이 유아기로부터 소년기와 청년기를 넘어서 이제 그 완숙을 눈앞에 바라보는 한 세대에 해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민족, 한 국가에 있어서도 그간의 성장도를 엄숙히 평가해 보아야 할 역사상의 이정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성년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자못 무량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지난 25년간의 광복 한국사는 한마디로 말하여 드물게 보는 「격동의 시기」였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 광복의 감격과 환희가 조국분단의 충격과 불행 속에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는가 하면,

” 번영의 희망과 기대는 북한 공산집단이 도발한 참혹한 전란 속에 한 조각 허공에 뜬 구름처럼 흩어져 버렸고,

” 나아가서 정부수립 이후의 혼돈과 정체는 급기야 두차례의 정치적 격동의 소용돌이를 치루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타방에 의하여 주어진 광복을 분간 소화할 만한 주체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련과 진통은 피할 수 없었던 필연의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극을 당하여 결코 좌절하지 않았으며, 역경앞에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장구한 민족사를 통하여 수 없이 많았던 내외의 우환을 강인한 의지와 거족적인 항쟁으로 이겨내고 조국의 독립을 보전하여 왔던 굳세고도 역센 우리 민족 본연의 잠재적 역량이 시련극복의 도정에서 서서히 그 빛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싹터 오른 민족적 자각이 응결하여 잠자고 있던 생명력과 창조력에 점화되어 민족중

홍의 전진대열을 정비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룩한 것이 바로 지난 1960년대였습니다. 그로부터 8, 9년! 우리들은 조국근대화 과업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온 세계는 50년대의 동란 한국이 이제 신생국 발전의 모범국가로 등장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선망과 경외의 눈으로 쳐다보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값있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거둔 외형적 성과보다도 이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무한한 저력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떠한 큰 일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과 긍지를 일깨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0년대에 착수한 중흥과업을 기필코 완수해야 할 사명의 70년대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4반세기의 역사의 장이 시작되려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는 지난 날의 역사적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결의와 우리 후손들에게 보람찬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일층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 제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겨레가 너 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가슴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국토분단의 비극입니다.

통일을 향한 민족적 비원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하루도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으나, 한편 통일의 전망은 수많은 난관과 애로에 가로막혀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민족반역집단이 북한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광신적이며, 호전적인 공산집단은 조국광복의 첫날부터 전 한반도를 폭력으로 적화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광분해 왔습니다.

6·25 남침의 참혹한 동족상잔에 이어서 휴전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 800여건이 넘는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고, 최근에는 무수한 무장공비를 남파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실증입니다.

정녕, 김일성과 그 도당은 마땅히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전범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당은 언필칭 평화통일이니, 남북협상이니, 연방제니, 남북교류니 하는 등 파렴치한 상투적 선전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청천백일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전범행위와 긴장조성의 책임을 전가해 보려는 적반하장의 흉계인 것이며,

” 무장공비 남파를 위장, 은폐하고 소박한 일부 사람들을 현혹케 함으로써 감상적 통일론을 유발해 보려는 간사할 술책인 것이며,

” 국제여론의 오도를 노리는 야비한 속셈인 것입니다.

이 허위와 기만에 가득찬 북한공산집단의 작태를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무릇, 공산주의의 정치체제는 기본인권의 유린과 철의 기وله 의한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임

니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 체제는, 같은 공산권내에서조차도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극좌 모험주의와 역사위조를 일삼는 개인 신격화가 판을 치는 폐쇄사회입니다.

오늘의 북녘 땅은 그러한 전횡과 공포가 휩쓰는 가운데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하나의 병영으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듯 역사와 민족과 천륜과 양심을 외면한 흉악한 무력도발집단과 대치하여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의 비원인 조국통일의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겠고,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김일성 일파의 전범집단이 끝내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의 배양」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미 수차례 걸쳐서 통일노력의 본격화는 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주체역량의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제도 시대의 진운인 자유화물결에 의해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전망하면서, 나는 광복 4반세기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하여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 공산집단이 지금과 같은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것은 가면이요, 위장이요,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장상태의 완화없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북한 공산집단의 명확한 태도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무장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무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한 공산집단이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민주·통일·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내외동포 여러분!

금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19세기 후반의 개화기로부터 근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세기, 우리 민족은 낙후와 예속과 전란과 혼돈이 겹친 수난을 이겨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중흥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마지막 중흥의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오늘로서 시작되는 앞으로의 4반세기를 넘기면 금세기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2000년경의 세계와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을 좌표가 어디이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때의 우리 조국은,

” 국토통일을 이룩한 지 이미 오래된 강력한 민족국가로서,

” 온 국민이 다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풍부한 선진 복지국가로서,

” 세계사의 주류에 당당히 참여하고 기여해 나가는 보람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착실한 그 준비기간인 것입니다.

1970년대는 이렇듯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의 근대 민족사의 도정에서 민족중흥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의 중흥과업을 성취하는 여부는 우리의 힘을 어느 만큼 「생산적」인 목표에 집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의 단결, 힘의 집중, 그것은 정녕 민족중흥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인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것도 민족의 단결이며, 민족의 염원인 국토통일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의 단결된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25년전 8·15에 구가했던 그 감격과 환희를 앞으로 기어이 성취할 조국통일의 그날, 보다 더 벅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단결하여 전진합시다.

(2)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 1973.6.23 박정희 대통령 특별성명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후 철의 장막으로 변

하고 남과 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민주 정부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 선언」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요소를 남겨둔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문제의 일괄 선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통일이 단기일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정세의 현실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땅에 안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

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연합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3)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

/ 1982.1.22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그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쌍방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이념·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장구한 세월을 걸쳐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 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해 1월 12일과 6월 5일 두차례에 걸쳐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직접 회담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길을 허심탄회하

게 찾아 보자는 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의가 실현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본인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통일방안을 밝힘으로써 북한당국과 전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의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정부형태와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어 쌍방이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 합의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은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북한측이 진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 놓고 우리측의 초안과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 쌍방간에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남북 쌍방은 그동안의 민족 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중지부를 찍고 하루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 자애적인 정상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남북 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 위에서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폐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분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

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전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방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안에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쌍방의 고위대표간에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만약 북한측이 이같은 예비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예비회담에 소정의 대표단을 파견할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4)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대통령 특별선언』

/ 1988.7.7 노태우 대통령 특별성명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지 반세기가 가까와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슬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협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

동체라는 의식을 등진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화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머지 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5)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 1989.9.11 노태우 대통령 국회특별연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 짓고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 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갯더미 위에서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흥 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 속에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렀습니다.

동서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대축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켜 서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같은 성취에 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하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 주었고 그것을 40여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거대한 안팎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이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동서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꾸어 놓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 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 온 경직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이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른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 지도록 돕고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땀과 인내, 겨레의 슬기와 뭉친 힘이 들어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하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국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

위를 누리거나 독재로 전횡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존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 간의 유혈투쟁과 6·25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거래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르게 회복·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 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국호·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현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 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 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 현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 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천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의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 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민족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을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 의지를 창조해 내어야 합니다.

민주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6)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 1994.8.15 김영삼 대통령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49주년 광복절을 국민과 더불어 경축합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두번째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과거 어느때 보다 조국의 장래에 대해 희망과 용기에 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변화와 개혁, 개방과 진진을 향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깨끗한 정부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상해 임정청사를 복원하고, 애국선열들의 유해를 고국땅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그 어느때 보다 확고해졌습니다.

민족의 정기는 되살아나고 있으며, 우리는 민족진운의 역사를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 맞추어, 새로운 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시아·태평양시대, 새로운 문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나 헤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원기를 한군데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통일과 번영에 대한 책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7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사와 남북관계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다시한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지난 1세기동안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민주주의가 꽃피고, 번영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를 이룩할 때 완성됩니다.

세계사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였고,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이 이 땅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렇듯 어렵게 확립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위에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냉전과 분단을 극복하고, 민

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 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도,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우선 을 두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아래서 반목과 불신을 쌓아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는 없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 니다.

정부는 이미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서, <1만족 1국가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남과 북은 적대와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멘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도 내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 치지 않고, 성급하게 외형만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공영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연합단계로 나 아가야 합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위 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 로는 1민족 1국가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의 길은 민주와 번영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 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이제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된 20세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인류는 이미 냉전 대신에,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대세 앞에 한반도만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구시대적 대남 적화전략을 마땅히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을 개선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산가족문제를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억류자 문제의 해결에도 지체 없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허한 이념의 대결 대신에 민족의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나씩 갖추 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정권 탄생이후 처음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안정 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같은 민족으로서 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이 협력 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때, 자연스런 통일,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결코 민족공동체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뢰는 서로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겨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세계와 민족 앞에 그 실천을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입니다.

지난 1년여동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핵문제의 해결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를 위배하는 상호비방은 중지되어야 하며,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을 무기로 하는 폐쇄지향의 모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에의 영광과 환희 뿐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의연하고도 한결같은 자세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반세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벽찬 감동과 함께 부끄러운 반성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남북에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난의 역정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년에 맞는 광복 50주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는 광복 50주년을 한마음 한뜻으로 「7천만의 한민족 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을 내외동포 앞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시대의 압제를 뚫고 민족의 광복을 성취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냈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서, 이제 우리는 민주와 번영이 넘쳐 흐르는 통일조국, 신한국을 마침내 창조해내야 합니다.

선열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는 제2의 광복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열과 우리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어왔던 통일되고 번영된 조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제2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모두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5. 남북관계 주요일지('97~'98)

- 1. 8 KEDO-북한 대북 경수로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정서와 부지의정서에 서명
- 1.1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공포
- 1.14 대만전력공사 총경리, 북한과 핵폐기물 매립계약 체결 언급
- 1.15 통일원 대변인,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매립 협정체결 중지 촉구
- 2.12 황장엽 노동당 비서, 주중대사관에 망명 요청
- 2.13 북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서명 거부
- 2.18 북한 평양방송, 북·미간 감정평화협정 체결 주장
- 2.20 통일원 대변인,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식량지원 참여 언급
- 2.22 북한 외교부대변인,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 언급
- 3. 5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뉴욕)
- 3. 6 97 T/S 훈련 취소 발표
- 3.31 통일원, 대북지원 확대허용조치 발표(민간단체 쌀지원 허용, 경제단체 참여 허용)
- 4.16~21 4자회담 공동설명회 후속회의 개최(뉴욕)
- 4.18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대북 식량지원 및 물류제공 절차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 4.24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적십자 실무요원 접촉 제의
- 4.30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북경개최 수용
- 5. 3~5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 5. 6 대한불교조계종, 조선불교도 연맹측과 「부처님 오신날」 불교도 공동발원문 합의
- 5.13 유종하 외무장관,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촉구
- 5.16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 5.17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수정 제의
- 5.23~26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2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북경)
 -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6. 1 북한 나진·선봉지대 경제개혁·개방조치 시행
 - 와화와 바꾼 돈표 폐지, 환율조정 등
- 6.24 KEDO-북한, 「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 서명 발표
- 6.28 4자회담 관련 한·미·북 3자협의 개최(6.28~6.30, 뉴욕)
 -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 합의
- 7.1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발표·시행
- 7.22 경수로 지원사업 관련 남북한 우편물교환 시행
- 7.23~25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북경)
 - 남북적십자사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타결
- 8. 4 대북 경수로 관련 남북간 통신 개통

- 8. 5~7 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개최(뉴욕)
- 8.10 정부, 실포 금호지구를 국내사업장으로 규정
- 8.14 통일원 대변인, 대북지원 식량투명성 의혹 관련 논평 발표
- 8.15 김영삼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4대방향」 등 제시(8·15 경축사)
- 8.19 실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식 개최
- 8.21 「유엔인권소위」 북한주민 출입국 자유 등 촉구 결의안 채택
- 8.23 통일원 대변인, 대북 추가지원(1천만달러) 발표
- 8.24 장승길 북한대사 망명
- 8.25 북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B규약」 탈퇴서한 UN 사무총장에게 발송
- 9. 9 북한 「주체」 연호 사용 시작
미 국적 민항기 최초로 북한 도착
- 9.18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개최(뉴욕)
- 9.20 EU, KEDO 정식 가입
- 9.23 미·일, 신방위 협력지침 합의
- 10. 7~10 남북한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회의 개최(태국 방콕)
 - 「대구/평양 항공교통 관제소간 관제통신망 구성·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10. 8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공식 추대
- 10.14 토지개발공사 등 5개사 협력사업자 승인
- 10.17 강릉침투 북한잠수함에서 구호식량 발견
- 10.27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제의
- 10.29 유엔 인권위, 일반권고를 통해 북한의 B규약 탈퇴가 국제규약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발표
- 11. 7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제의
- 11. 8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제의
- 11.19 남북한 항로관제소간 직통전화 개통
- 11.21~22 4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개최(뉴욕)
- 11.24~25 KEDO 집행이사회(뉴욕)
 - 경수로 예상사업비 51억8천만달러 확정 및 재원분담협상 개시
- 12. 9~10 제1차 4자회담 본회담 개최(제네바)
- 12.19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당선 기자회견, 남북정상회담 제의
- 12.23~25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북경)
- 12.24 국군포로 양순용씨 탈북 귀환
- 12.2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착공(1999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

1. 7 북적 위원장대리 이성호, 정원식 한적 총재 앞으로 보낸 방송편지를 통해 비전향장 기수 송환 요구
- 1.17 북한, KBS의 「진달래꽃 필때까지」 방영 보복 경고
- 1.20~24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북한 향산호텔)
- 1.22 한·미차관보급 정책협의회 개최
- 2.5 KEDO, 북한 신포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 2.5 미국, 98년분 대북 식량지원 20만톤 지원 발표
2. 5~6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
- 2.12 유엔, 4억불 규모의 제4차 대북지원 계획 발표
- 2.15 북한 사회안전부, 이산가족 주소안내소 설치 발표
- 2.17 인공위성(ASIASAT II) 이용 남북한간 관제 통신망 개통(1회선)
- 2.18 북한, 정당·단체 연합회의 개최
- 2.19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조선 정당 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 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
- 2.19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북측의 편지접수 수락
-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제의
3. 1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사
 - 남북특사교환 촉구,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실현 촉구
3. 9 정부, WFP를 통한 옥수수기준 5만톤 식량지원 발표
- 3.10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대북지원 관련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 3.11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제의 관련 수정 제의
- 3.13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수락 통보
- 3.14 4자회담 제2차 준비회의 개최(제네바)
- 3.16~21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개최(제네바)
- 3.18 정부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 발표
 - 대북지원관련 방북, 이벤트성 모금행사, 언론·기업의 협찬,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3.19~20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 3.25~27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북경)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4. 4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비료지원 요청 관련 남북 당국대표회담 제의
4. 6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북한의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제의 수락 및 수정 제의
4. 7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장소 북경 고집

- 4. 8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북경 개최 동의 및 대표단 명단 통보
- 4.10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
- 4.11~17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북경)
- 4.23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항로 이용개시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
- 4.30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시행
 - 대기업·경제단체의 수시방북제도 확대
 - 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 및 생산설비 반출제한 완화
 - 투자업종·규모제한의 완화
- 5. 2~12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 공연
- 5. 5~9 KEDO-북한간 제5차 고위전문가 회의 개최(묘향산)
- 5. 8 KEDO, 북한 신포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 5. 8 EU, 북한 농업실태 조사단 파견
- 6. 1~2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 6.15 북한, 8·15 대축전 관련 대남 편지 전달을 위한 연락관 접촉 제의
- 6.15 8.15 대축전 관련 북측 편지 접수
- 6.16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한우 500두 대북지원(판문점 경유)
- 6.22 강인덕 통일부장관, 8·15경축행사 관련 실무접촉 제의
- 6.22 합동참모본부, 북한 잠수정 1척 동해안에서 예인 발표
- 6.23 판문점 장성급 회담
- 6.28~29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브라셀)
- 6.30 판문점 장성급 회담
- 7. 9 자유의 집 준공
- 7.12 목호에서 북한 무장간첩 시신 발견
- 7.15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서 통해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시인·사과, 재발방지 등 촉구
- 7.27~28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가서명)
- 7.29 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 유효입장 재확인 발표
- 8.15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
 - 대북정책 3대원칙 견지, 모든 경제협력 지원 권장,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 촉구, 장·차관급의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 제안, 대통령 특사 평양 파견 용의
- 8.18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설립
- 8.20 북한 조평통, 8·15 경축사 대북제안에 대해 공개질문장을 통해 사실상 거부
- 8.21~9. 5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뉴욕)
- 8.31 일본, 북한의 로켓 발사사건에 대응하여 「재원분담결의안」 동의 유보
- 9. 1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 9. 3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결성
- 9. 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개막
- 9. 7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 협력사업 승인

- 9.10 미·북, 제네바합의 이행 관련 합의
 - 중유공급 9월 하반기 재개, 연말까지 공급 완료
 - 연변 폐연료봉의 봉인작업 재개
- 9.10 대구 비행정보구역 통과 일본-북한간 직항로 운영 개시
- 9.18 정부,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 지원 허용
- 9.20 북한 평양방송,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한국정부의 의도적 불순물 투여 주장
- 9.23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 회의 개최(서울올림픽 제1경기장)
- 9.2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개소(이북5도위)
- 9.30 국군포로 장무환씨 귀환
- 10.16 북한,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현대측에 아·태평화위 서기장 명의 해명문건
통보
- 10.21~10.24
 -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개최(제네바)
- 10.27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기탁2차분 한우 501두 대북지원
- 10.31~11. 7
 - 윤이상 통일음악회 개최(평양)
- 11. 9 KEDO집행이사회(뉴욕)
 - 재원분담결의안 채택
- 11.17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망 개통(6회선)
- 11.18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 12. 1 제198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북결의안 채택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추구
 -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수용 촉구 결의안
- 12.13 통일부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주년 관련 논평 발표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 12.14 국회결의안 대북서한 발송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촉구